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과
최고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17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계학전공

박 상 춘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홍용식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과
최고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arnings Management and
CEO Turnovers of Credit Unions



2016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계학전공

박 상 춘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홍용식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과
최고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arnings Management and
CEO Turnovers of Credit Unions

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계학전공

박 상 춘

박상춘의 경영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과 최고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박 상 춘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에 의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한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였는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항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종속 변수로 두고, 설명변수로 비재량적이익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이익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출금 규모, 고정이하여신 규모, 기초대손충당금 규모, 기중 상각액(write-offs) 등의 변수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자료로는 2015년 말 정상 영업 중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7,445개 신탁-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기간 중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은 7,223개 신탁-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대유대(지역·단체·직장)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규모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크지 않음에 따라 공동유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매 4년마다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이사장 4년 임기의 특

성(초임, 연임 등)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이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추가분석을 통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조합이 단체조합보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큰 조합이 작은 조합보다 이익조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를 통한 이사장 교체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초임 4년 재임기간 중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연임 4년 재임기간에 비해 이익조정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이사장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는 초임 또는 연임기간의 다른 연도에 비해, 그리고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는 연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에 비해 각각 이익조정을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장 교체연도 이익조정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가분석에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는 만큼, 재무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coverage ratio, 순자본비율 등 경영지도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합의 규모나 공동유대 특성 등을 고려한 차등 감독과 함께 경영자의 재량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향후 미래채무상환능력(FLC) 도입을 통한 대손충당금적립 유도 등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차별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증모형이 단순하고 검증방법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한계일 수 있다.

【주요어】 신용협동조합, 이익조정, 대손충당금, 최고경영자(이사장) 교체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6
1.3 논문의 구성	7
II. 신용협동조합 현황	8
2.1 개요	8
2.2 일반현황	10
2.3 경영현황	14
2.4 재무상태 개선조치제도	18
2.5 회계처리기준	20
I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3
3.1 이익조정 관련 연구	23
3.2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연구	24
3.3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연구	35
3.4 이익조정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43
3.5 선행연구와의 차이	47
IV. 연구 설계	49
4.1 연구가설의 설정	52
4.2 표본의 선정	61
4.3 연구모형의 설정	63

V. 실증분석	70
---------------	----

5.1 가설 1의 검증(이익유연화)	70
5.2 가설 2의 검증(최고경영자 교체)	82
5.3 실증분석 결과 요약	97
5.4 추가분석	98

VI. 결 론	108
---------------	-----

6.1 연구결과의 요약	108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11

참고문헌	114
------------	-----

ABSTRACT	119
----------------	-----

표 목 차

<표 1> 공동유대별 출자금 최저한도	9
<표 2> 공동유대별 조합 수 추이	11
<표 3> 공동유대별 조합원 현황	12
<표 4> 총자산 변동 추이	13
<표 5> 공동유대 조합별 총자산 현황	13
<표 6> 자산규모별/공동유대별 조합 수 현황	14
<표 7>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6
<표 8> 공동유대별 여·수신 현황	17
<표 9> 공동유대별 당기순이익 현황	17
<표 10>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현황	20
<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2
<표 12>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요약	32
<표 13>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요약	41
<표 14> 재량적 발생액 측정 접근방법 요약	46
<표 15> 연도별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 도래 현황	57
<표 16> 표본의 선정	62
<표 17>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70
<표 18> 상관관계 분석	72
<표 19> 회귀분석 결과	74
<표 20> 비재량적 초과이익 성과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76
<표 21> 이사장 (임기)재연임 허용 전후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78
<표 22> 공동유대 형태별 회귀분석 결과	79
<표 23> 자산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81
<표 24>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 회귀분석 결과	84
<표 24-1>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85
<표 25> 이사장 임기 마지막 년도 도래 현황	86
<표 26>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 회귀분석 결과	87

<표 26-1>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와 그 이외 임기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89
<표 27>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의 마지막연도 회귀분석 결과 ...	91
<표 27-1>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기간의 마지막연도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92
<표 28> 이사장 교체연도 회귀분석 결과	94
<표 28-1>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교체연도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96
<표 29> 가설검증결과 요약표	97
<표 30> 회귀분석 결과(추가분석)	102
<표 31> 순 자본비율 수준별 회귀분석 결과(추가분석)	104
<표 32> 공동유대 형태별 회귀분석 결과(추가분석)	106
<표 33> 총자산 규모별 회귀분석 결과(추가분석)	107



그 립 목 차

<그림 1> 실증분석의 체계도	51
<그림 2>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과 연임기간 비교	56
<그림 3>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와 다른 연도 비교	58
<그림 4> 이사장 임기 초임 및 연임의 마지막 해 비교	59
<그림 5>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非)교체연도 비교	60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분식회계를 통하여 회계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는 기업들과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독정책은 일반기업 및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¹⁾의 경우 아직 IFRS 적용은 받지 않고 있으나, 그 동안 상호금융회계처리준칙 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상호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1997년 말 1,666개이던 신용협동조합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2015년 말 910개로 감소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일정한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들이 자금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때에 대출을 받는 단순한 영업구조임에도 영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익조정과 회계분식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익조정

1) 1960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인 성가신용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는 주로 카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었다. 정부는 1970년대 초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금융(私金融) 양성화 3법(「신용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단기금융회사법」)을 1972년 제정하면서 신용협동조합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earnings management)은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강태호, 2010). 이익조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범위 내에서 재무나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회계추정이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GAAP을 위반하여 이익조정을 하는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과 구별된다(권수영 등, 2010). 이익조정 현상은 또한 경영자의 동기에 따라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나 big bath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익유연화는 경영자가 회계기간 간에 보고이익의 심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항목을 조정함으로써 보고이익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big bath는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이익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을 때 경영자는 미래에 성과를 개선하기 쉽도록 big bath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더욱 낮게 보고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익조정에 관한 회계연구는 그동안 제조업 등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익조정 연구는 발생액(accruals)을 조정²⁾하여 이익조정한다고 가정하고 측정방법으로 총발생액접근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발생액은 감가상각비,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의 변동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경영자가 재량성을 활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이라고 하여 Jones(1991) 모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융회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별항목들의 변화를 추정하는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재량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항목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나 유가증권처분손익 항목 등이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시가평가가 보편화되고 있어 주로 대손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여부가 연구되고 있다.

- 2) 회계학에서는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의 변경을 통한 실제이익조정의 측정방법이 제시되면서 실제 이익조정을 주제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경영자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이익조정은 경영자가 실제영업활동의 변경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연구개발비 혹은 광고선전비를 조정하거나 연말에 매출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Roychowdhury(2006)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매출활동, 생산활동, 판매관리활동의 조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 및 대출의 단순한 업무구조로 수익의 대부분을 여신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자산의 부실화는 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감독당국은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 여신성가지급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등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최소 적립비율(정상 1%~추정손실 100%) 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손실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규정에 명시해 놓고,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용협동조합은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1997년 말 1,666개 조합의 총자산은 27조 원이었으나, 매년 경영부실화로 조합이 퇴출되면서 2015년 말 조합 수는 910개로 줄어든 반면 총자산은 6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업환경의 악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이 구조조정의 우선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이 절대권 권한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당국 역시 이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경영성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적 재량권을 이용하여 보고이익 수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곽영민 등, 2011). 이러한 이익조정은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 및 기업 가치 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시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자의 사적이익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행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신임경영자가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하거나(Moore, 1973; Strong and Meyer, 1987; 이아영 등, 2007), 최고경영자가 마지막 재임연도에 단기적인 보너스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Dechow and Sloan, 1991), 전임경영자는 마지막 재임기간에 보수수준을 증대시키거나 퇴임 후의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익의 상향조정 동기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곽영민 등, 2011).

신용협동조합의 최고경영자, 즉 이사장은 조합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선출직으로 일반기업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경영의 전문성보다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영업구역(=공동유대) 내에서의 영향력을 토대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사회 의장, 금리전결권, 조합대표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사금고화(私金庫化)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그동안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다가 2013년 6월부터 2차례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대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지표보다는 조합원의 신임도 유지, 조합의 경영성과 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재량적 항목을 활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미래의 손실흡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순자본비율을 100분의 2 이상 유지해야 하고,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감독당국 및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감독당국이나 신협중앙회의 경영진 면담 및 자구계획 제출 요구, 상시감시 강화 등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한 평판리스크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통한 순자본비율 관리에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중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위해 재량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어

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은행의 경영자들은 수익성지표에 초점을 두어 재량적 항목을 반영하기 전인 조정 전 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많이(적게) 반영하여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이익관리를 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문현주, 2004).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도 안정적인 이익관리를 위해 재량적 항목을 반영하기 전인 비재량적이익을 토대로 이익조정을 행하는지 여부를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출직인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사적이익을 도모한 이익조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사장은 임기 동안 이익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고 매 4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대비하여 초임 및 연임 형태별에 따라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이사장 교체시점을 전후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추가분석에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이 재량성이 높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가지고 순자본비율도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 중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여부를 처음으로 분석하고, 감독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독당국이 건전성분류대상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토록 하는 것은 정확한 기간손익 산정과 대출채권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만약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이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해 이익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경우 경영성과 부실의 만회 또는 사적이익 측면에서 이익조정을 통한 보고이익의 왜곡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당국이나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성과를 판단할 때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시계열 추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항목인 대손충당금설정액에 대한 회계규제 방향과 함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감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이익조정에 관한 국내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관련 연구로는 최효순(2003), 문현주(2004)가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김정미(2004), 박연희(2005), 지현미·박홍조(2006), 선순용(2010)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강태호(2009)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지역농협 모두 이익조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검증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모형을 원용하였는데, 신용협동조합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수취기관과 영위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재량적 활용이 높은 항목인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종속변수로 두고, 관심변수인 비재량적초과이익이나 순자본비율 그리고 대손충당금설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설명변수로 두어 모형을 설계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기능이 예금자보호법에서 신탁중앙회 자체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이 부실화되어 퇴출되는 경우 예금주별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이 스스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주별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5년 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재무자료 및 이사장 임기정보 입수가 가능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연간을 표본으로 하여, 먼저 신용협동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³⁾과 비재량적초과이익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조정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유대별(지역조합과 단체조합), 자산규모별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기말 설정해야 할 총 대손충당금에서 기초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기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함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대손상각비를 포함하여 병기하였다.

(300억 원 이상과 미만), 이사장 임기형태별(이사장 초임 재임기간과 연임 재임기간,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의 마지막 연도와 초임 또는 연임의 나머지 연도,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의 마지막 연도와 연임기간의 마지막 연도,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교체연도)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이익조정 특성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순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비재량적초과이익을 가지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익유연화 측면에서 보고이익을 관리하기 위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조정할 유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조합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장 임기 형태별 그리고 이사장 교체 여부 등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셋째,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활용이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경영지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순자본비율 관리에도 이용되는지 분석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신용협동조합 현황을 신용협동조합 개요, 일반현황, 경영현황, 재무상태 개선조치제도, 신용협동조합 회계처리기준 등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로 기본가설과 보조가설을 설정하고 실증표본을 선정하여 각 가설별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 V장에서는 이익유연화 측면의 이익조정 여부, 이사장 임기형태에 따라 이익조정의 특성을 달리하는지 여부, 그리고 순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이익조정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마지막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논의한다.

Ⅱ. 신용협동조합 현황

2.1 개 요

신용협동조합(이하 약칭인 “신협” 또는 “조합”과 혼용)은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달리 공동유대(共同紐帶)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활동하는 조합형태의 금융회사이다.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2조)에서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를 세 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다.⁵⁾ 지역조합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을 공동유대로 조직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조합은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나 시장상인단체 또는 구성원 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등 단체를 공동유대로 조직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이나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유대 종류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전환조건을 갖춘 경우 지역조합으로의 공동유대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⁶⁾

신용협동조합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조합원 형태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법령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⁷⁾ 따라서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 1인 출자와

4)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하며, 공동유대의 종류로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이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9조 등)

5) 신협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정관 등에 의거하여 설립 및 퇴출, 출자 및 경영구조, 건전성 감독제도, 업무 및 사업관련 감독제도, 재무상태 개선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검사 및 행정처분 등을 받고 있다.

6)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총 53개 단체·직장 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전환한 바 있다.

7) 법령에서는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비조합원”이라 한다)를 조합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 조합원의 가족,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등)

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에서는 <표 1>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형태별, 소재지별에 따라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표 1> 공동유대별 출자금 최저한도

구분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특별시·광역시	3억 원	1억 원	4천만 원
시	2억 원	8천만 원	
군	5천만 원	5천만 원	

신용협동조합원의 조합원은 법률적으로는 조합의 구성원이자 경제적으로는 조합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라면 조합원은 소유와 경영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⁸⁾ 따라서 법령에서는 경영구조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구조는 총회, 이사회, 감사, 임원, 간부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의 임원선출,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재적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1인 이상 본인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회는 이사 5~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1차 연임(총 8년)만 가능하다가 현재는 2차례(총 12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⁹⁾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간부직원인 전무

8)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 비교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주식회사의 주주
▸ 조합원의 인적결합을 기초로 성립	▸ 주주의 물적결합을 기초로 성립
▸ 1인 1표 원칙	▸ 1주 1표 원칙
▸ 1인 출자한도 제한	▸ 1인 출자한도 제한 없음
▸ 조합원의 자격요건 제한	▸ 원칙으로 주주의 자격제한 없음
▸ 소유자=운영자=이용자	▸ 소유자≠운영자≠이용자

9)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또는 상무(실무책임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동 업무관련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장 선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평균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2.2 일반현황

2.2.1 조합 수

신용협동조합은 금리자유화(1988. 12월~), 은행 여신금지 업종 폐지¹⁰⁾(1998. 1월) 등으로 인해 은행과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영업기반도 잠식되어 왔다. 은행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여신운용이 허용되면서 여타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우량 중소기업 및 개인(가계) 대출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여타 서민금융회사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일원화¹¹⁾(2014. 8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실물경제 부진 지속, 규제 신설·강화 등도 적정 수익성 확보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표 2>에서와 같이 1997년 말 1,666개이던 신용협동조합이 구조조정 등을 겪으면서 2015년 말 910개로 감소되었다. 동 기간 중 퇴출된 조합은 총 775개로 유형별로는 인가취소 3개 조합, 파산 357개 조합, 해산 228개 조합, 합병 187개 조합이며, 동 기간 중 신규 설립된 조합은 19개 조합이다.

10)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현,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에 대해 1974년부터 골프장·콘도·주점·불건전오락기구 등 소비·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에 대해 여신취급 및 담보취득을 금지해 오다가 1998.1.26. 이를 폐지하였다.

11)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은행은 60%,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저축은행은 70%로 규제해 오다가 한시적(1년 단위 일몰)으로 70%로 일원화한 바 있다.

<표 2> 공동유대별 조합 수 추이

(단위: 개)

구 분	'98	'03	'04	'09	'10	'11	'12	'13	'14	'15
지역조합	1,052	709	700	664	663	669	677	681	672	666
단체조합	227	164	161	142	134	126	114	105	96	94
직장조합	313	213	205	176	165	160	159	156	152	150
계	1,592	1,086	1,066	982	962	955	950	942	920	910

한편, 공동유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역조합의 비중이 1998년 말 66.1%에서 2015년 말 73.2%로 증가한 반면, 단체조합 및 직장조합의 비중은 1998년 말 각각 14.2%, 19.7%에서 2015년 말 각각 10.3%, 16.5%로 감소하였다. 단체조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단체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전환을 한데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2.2 공동유대 전환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유대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공동유대 범위 조정이 가능하다.¹²⁾ 전환조건으로는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등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지역조합이 없는 시·군·구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단체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역조합의 출자금 최저한도 등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조합으로의 전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07년에서 2015년까지 단체조합 또는 직장조합이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를 전환한 조합은 총 53개이며 이중 52개 조합이 단체조합이다. 동 기간 중 공동유대를 전환한 10개 조합은 퇴출되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조합은 43개 조합이다.

12) 신협중앙회의 「신협 정관변경 및 지사무소 설치지침」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2.3 조합원 수

<표 3>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형태별 조합원 수(비조합원 제외¹³⁾)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말 조합원 수는 총 5,752천명 수준이며, 공동유대별로는 지역조합이 5,094천명으로 전체의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직장조합 342천명, 단체조합 316천명 순이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지역조합이 7.7천명, 단체조합이 3.4천명, 직장조합이 2.3천명 수준이다.

<표 3> 공동유대별 조합원 현황(2015. 12월말)

(단위: 천명, %)

구 분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계
조합원 수	5,094	316	342	5,752
조합당 평균	7.65	3.36	2.28	6.32
비중	88.6	5.5	5.9	100.0

2.2.4 총자산

신용협동조합(910개)의 총자산은 <표 4>에서와 같이 2015년 말 65.8조원으로 예탁금 비과세한도 확대(2009년)¹⁴⁾, 저축은행 부실화¹⁵⁾ 등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2012. 12월) 이후 총자산증가율이 2013년 2.5%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말 예탁금비과세제도가 폐지될

- 13)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비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비조합원은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연도 신규취급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2)
- 14) 상호금융 예탁금비과세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후 비과세한도가 지속 확대되어 왔다. 국회는 당초 2015년 말 동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 비과세한도: (‘76)1백만원 → (‘81)5백만원 → (‘86)1천만원 → (‘91)2천만원 → (‘09)3천만원
 - 예탁금이자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담[은행은 이자소득세 14.0%, 주민세 1.4% 부담]
 - 2015. 12월말 상호금융의 비과세예탁금은 123.8조 원으로 총수신의 27.3%를 차지
- 15)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실물경제 및 부동산시장 등이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화가 심화되자 2011년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1년 중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바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7.3.)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동 폐지가 3년간 유예되면서 비과세예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총자산 변동 추이

(단위: 십억 원, %)

'07	'08	'09	'10	'11	'12	'13	'14	'15
27,409 (-)	30,385 (12.5)	39,699 (19.0)	47,748 (20.3)	49,545 (3.8)	55,296 (11.6)	56,668 (2.5)	60,479 (6.8)	65,820 (8.8)

주)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5>는 공동유대 조합별 총자산으로서, 2015년 12월 말 지역조합은 58,421십억 원으로 신탁 총자산의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조합은 4,210십억 원(비중 6.4%), 직장신탁은 3,188십억 원(비중 4.8%)이다. 전체 조합당 평균자산은 723억 원이며, 공동유대별로는 지역조합이 877억 원, 단체조합이 448억 원, 직장조합이 213억 원이다.

<표 5> 공동유대 조합별 총자산 현황(2015. 12월말)

(단위: 십억 원, 개)

구 분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계
총자산	58,421	4,210	3,188	65,820
조합수	666	94	150	910
조합당 평균(억원)	877	448	213	723

한편, <표 6>은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 크기에 따른 공동유대별 조합현황 분포이다. 2015년 12월 말 신탁 전체(910개)의 자산규모별 조합 수는 총 자산 300억 원¹⁶⁾ 미만 조합이 총 266개로 전체 조합의 29.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조합이 444개 조합으로 전체 조합의 48.8%를, 1,000억 원 이상 조합이 200개 조합으로 전체 조합의 22.0%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유대 자산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지

16)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역조합의 경우 총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이 571개 조합으로 지역조합 수 (666개)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단체 및 직장조합의 경우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이 각각 45개 및 28개 조합으로 각 공동유대 조합 수(94개 및 150개)의 47.9% 및 18.7%를 차지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면에서 볼 때 단체 및 직장조합이 지역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표 6> 자산규모별/공동유대별 조합 수 현황(2015. 12월말)

(단위: 개, %)

구분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계
100억 원 미만	9 <1.4>	22 <23.4>	78 <52.0>	109 <12.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86 <12.9>	27 <28.7>	44 <29.3>	157 <17.2>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132 <19.8>	16 <17.0>	12 <8.0>	160 <17.6>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253 <38.0>	19 <20.2>	12 <8.0>	284 <31.2>
1000억 원 이상	186 <27.9>	10 <10.7>	4 <2.7>	200 <22.0>
계	666 <100.0>	94 <100.0>	150 <100.0>	910 <100.0>

주) < >내는 각 공동유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3 경영현황

2.3.1 자금조달 및 운용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대출해 주고, 여유자금 중 일부는 신탁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금의 경우 가입한도 제한은 없으나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고 있다. 2003년 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적금 및 출자금¹⁷⁾이 보호되다가 조합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적자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예금자보호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예금자보호기능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었다. 2004년부터 정부의 공적자금에 의한 예금자보호에서 신탁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7>은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으로서, 2015년 말 자금조달 총액은 65.8조원으로 이중 조합원 예·적금 등 수신 비중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합원출자금 6.3%, 외부차입¹⁸⁾ 0.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금운용으로는 조합원(비조합원¹⁹⁾ 포함)에게 대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신탁중앙회에 예금의 일정비율을 상환준비금으로 의무 예치하고, 그 외 여유자금은 신탁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조합원 대출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 규모가 클 경우 특정 차주의 부실화가 조합의 부실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조합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규에서는 조합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과 연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다.²⁰⁾

2004년부터 신탁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부를 신탁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한다.²¹⁾ 또한 조합은 여유자금을 신탁중앙회에 예치할 수 있고 신

17) 출자금은 2007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8)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및 동 「법시행령」 제16조의 3에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내로 차입한도를 두고 있다.

19)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연도 신규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원 미만인 경우 30억 원,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21)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 예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달 5일까지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 중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은 신탁중앙회에 예치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협중앙회는 동 예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에 지급하고 있다. 유가증권 운용의 경우 법규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조합이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공채,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수익증권 등이 있다.

2015년 말 자금운용 규모는 65.8조원으로 이 중 조합원 대출이 6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회 예치 24.0%, 유가증권 운용 5.3% 등이다.

<표 7>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2015. 12월말)

(단위: 억 원, %)

자금조달			자금운용		
		비 중			비 중
수 신	583,322	(88.7)	여 신	426,368	(64.8)
차입금	4,109	(0.6)	중앙회 예치	157,988	(24.0)
출자금	41,577	(6.3)	유가증권	35,021	(5.3)
기 타	29,088	(4.4)	기타	38,719	(5.9)
계	658,096	(100.0)	계	658,096	(100.0)

2.3.2 여·수신

<표 8>에서와 같이 2015년 말 신용협동조합의 전체 여신은 43.6조 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유대별 여신은 지역조합이 40조 원으로 전체 여신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체조합이 5.7%, 직장조합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신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전체로는 58.3조원으로 조합원으로 받은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유대별 수신을 보면, 지역조합의 비중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체조합이 6.2%, 직장조합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공동유대별 여·수신 현황(2015. 12월말)

(단위: 억 원, %)

구분	여신 ¹⁾	비중	수신	비중
지역조합	399,872	(91.7)	529,320	(90.7)
단체조합	24,761	(5.7)	36,038	(6.2)
직장조합	11,187	(2.6)	17,964	(3.1)
계	435,820	(100.0)	583,322	(100.0)

주1) 대손충당금 9,452억 원 포함

2.3.3 당기순이익

<표 9>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별 당기순이익으로서, 2015년 조합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350억 원이며, 이 중 지역조합이 1,838억 원(비중 7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장조합 386억 원(비중 16.4%), 단체조합 126억 원(비중 5.4%) 순이다. 조합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지역조합이 276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장조합이 257백만 원, 단체조합이 134백만 원이다.

지역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의 여·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여신 91.7%, 수신 90.7%)하고 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78.2%)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직장조합의 경우 여·수신 비중(여신 2.6%, 수신 3.1%)이 낮음에도 당기순이익 비중(16.4%)이 높은 편으로 이는 같은 직장 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부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공동유대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조합당 평균	
지역조합	80,684	134,798	183,816	276.0
단체조합	9,435	15,489	12,611	134.2
직장조합	41,514	39,272	38,577	257.2
계	131,634	189,559	235,005	258.2

2.4 재무상태 개선조치제도

2.4.1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 및 신탁중앙회(이하 “감독당국”과 혼용)는 신용협동조합법²²⁾에 근거하여 조합에 대해 경영실태를 평가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조합의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부문별평가(CAMEL)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계량평가지표 및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평가로는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등 5개 부문을 평가하고, 부문별로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한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종합평가는 부문별평가등급을 종합하여 산정한 후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에 의거 금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²³⁾ 평가결과는 경영취약조합에 대한 건전성 지도, 종합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무상태 개선조치 부과, 합병 권고 및 경영관리 실시 등으로 활용한다.

2.4.2 재무상태 개선조치

신탁중앙회 회장은 부실조합에 대해 재무상태 개선권고, 재무상태 개선요구 등을 통해 조합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관리를 하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권고 요건으로는 ①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②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③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

22)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항, 동 「세칙」 제12조 제4항

23)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계량지표 산정기준과 함께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를 각 부문별로 5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제12조의 4)

권의 발생으로 ①~②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재무상태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은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경비절감, 이익배당의 제한 등 재무상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회에 제출하고, 중앙회는 이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재무상태가 회복된 경우 동 조치를 해제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한 단계 강화된 재무상태 개선요구 조치를 취한다.

재무상태 개선요구 요건으로는 ①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②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③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①~②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재무상태 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 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중앙회는 동 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조합에 대해 합병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개선(改選) 요구 등의 조치를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되며 정리단계로 들어간다. 다만,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조합이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

2015년 12월말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고 있는 조합은 총 119개(전체조합의 13.1%)이며, 이중 재무상태 개선권고 조합이 85개, 재무상태 개선요구 조합이 34개이다. 또한 2015년 중 98개 조합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2.4.3 조합 구조조정

<표 10>에서와 같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퇴출된 조합은 총 775개이며, 신규 설립된 조합은 총 19개 이다. 동 기간 중 조합의 변동사유별로 살펴보면, 파산이 357개 조합(비중 4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산 228개조합(비중 29.4%), 합병 187개 조합(비중 24.1%), 인가취소

3개 조합(비중 0.4%) 순이다.

<표 10>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현황

(단위: 개, %)

'97말 (A)	조합 수 변동 사유						'15말 (A-B+C)
	인가취소	파산	해산	합병	계(B)	신규(C)	
1,666	3 (0.4)	357 (46.1)	228 (29.4)	187 (24.1)	775 (100.0)	19	910

주) ()내는 비중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²⁴⁾되는 2003년 말까지 부실조합은 주로 파산 또는 해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 신협중앙회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보호기능이 수행되면서 주로 합병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후 지역조합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가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직장신협으로 국방신용협동조합을 신규 인가한 바 있다.

2.5 회계처리기준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상호금융회사²⁵⁾임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이외에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신용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결산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신용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회사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24) 조합 파산 등의 경우 순자산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조합원 예금에 대해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25) 상호금융에는 신용협동조합(감독주체 금융위원회), 농업협동조합(감독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감독주체 해양수산부), 산림협동조합(감독주체 산림청), 새마을금고(감독주체 행정자치부) 등을 포함하며, 각각 설립인가와 감독주체가 상이하다.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의 대부분이 이자수입²⁶⁾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자수입액과 이지지급액을 영업손익으로 처리함에 있어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의 회계처리가 중요하며, 동 손익의 산정은 중앙회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공여한다.²⁷⁾ 차주가 이지지급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출금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은 감독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요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매분기 말 대출채권에 대해 <표 1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정상’은 1% 이상, ‘요주의’는 10% 이상, ‘고정’은 20% 이상, ‘회수의문’은 55% 이상, ‘추정손실’은 10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각각 적립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대손충당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토록 하는 것은 정확한 기간손익 산정과 보유여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6) 2015년 조합의 총손익 구성은 대출채권이자(68.5%), 예치금이자(13.5%), 유가증권운용손익(5.6%), 수수료수익(6.1%), 기타(6.3%) 등이며, 총비용 중 이자비용비중은 47.1%이다.

27) 2015년 말 대출담보별 구성은 비주택담보대출 50.5%, 주택(아파트 포함)담보대출 30.1%, 신용대출 7.5%, 금융기관보증대출 2.6%, 예·적금담보대출 1.2%, 동산담보대출 8.1% 등이다. 차주별 대출비중은 가계대출 88.1%, 개인사업자대출 2.5%, 법인대출 8.1%, 정책자금대출 1.3% 등이다.

<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여신성 가지금금 포함)²⁸⁾

구 분	분류기준	예 시
정 상	▶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1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요 주의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경우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²⁹⁾ 해당 금액	-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회 수 의 문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추 정 손 실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

2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 2) <별표1-2>에서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적금 및 출자금: 불입액의 100%, 상장주식·채권은 대응가격의 100%, 수익증권은 기준가격의 100%, 대지는 공시지가의 100%, 건물은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아파트는 시가의 70%, 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최종법사가, 기타는 시가의 70% 등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1 이익조정 관련 연구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과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권수영 등(2010)은 이익조정의 연구 사례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거나 조작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하는지, 어떠한 기업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시도하는지, 이익조정을 하면 이 사실이 주가에 반영되는지, 이익조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을 주는지 등이 연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익조정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익조정방법을 크게 실질적인 이익조정과 재무보고상 이익조정으로 구분했는데, 한 가지는 투자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여 실제로 자원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권수영 등, 2010). 이 두 가지 중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범위 내에서 이익조정”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Healy and Wahlen(1999)은 이익조정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익조작은 연구자에 따라서 이익조정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익조정과 이익조작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이익조정은 GAAP 범위 내에서 재무나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거나 회계추정이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익조작은 GAAP을 위반하여 이익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권수영 등, 2010).

이익조정의 형태로는 이익유연화(이익평준화라고도 일컬음)(incoming smoothing)나 big bath 등을 들 수 있다. 이익유연화는 경영자가 보고이익이 회계기간 간에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목표이익(target income)이나 표준이익(standard income)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big bath는 이익이 기대보다 이하일 때 경영자는 미래에 성과를 개선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준비할(clearing the deck)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온갖 비용을 인식하거나 또는 새로 부임하는 경영자가 취임 첫해에 가급적 비용을 많이 인식하여 이익을 줄이고 다음해부터 이익을 늘리려는 유인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권수영 등, 2010).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들은 국내의 경우 대부분 은행 등 금융회사보다는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일반기업의 이익조정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생액(accruals)에서 비재량적발생액(non-discretionary accruals)을 차감한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가지고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금을 받아 대출로 운용하는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손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는 은행업에서 대손설정액이 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2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연구

금융회사의 이익조정은 자금조달 및 운용, 경영형태, 지배구조, 감독규제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의 이익조정과 검증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수취기관은 대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 중에서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 즉, 주된 영업활동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에게 공급하여 주는 예금·대출 행위인 것

이다.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만큼 수익으로 취하고 있는데 통상 예·대 마진은 은행보다는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더 높은 편이다. 여신의 경우 만기일에 회수될 때까지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데 경영자들은 연체나 부도발생 등 객관적인 부실징후와 함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판단도 경영자에게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출행위에서부터 대출금 회수 시까지 발생하는 대손위험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있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재한다.

3.2.1 국내 선행연구

대손충당금 등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관한 국내연구로 일반은행의 경우 최효순(2003), 문현주(2004)가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 김경미(2004), 박연희(2005), 지현미·박홍조(2006), 선순용(2010), 송현(2016)이 있으며, 농협 상호금융의 연구에는 강태호(2009)가 있다.

최효순(2003)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상장은행을 대상으로 107개 은행-연도 표본을 가지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액 조정 유인과 조정수단의 선택에 대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국내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축소 또는 증대시킬 경우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고려”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예상한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익조정에 있어서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수익성 지표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손충당금전입 이전의 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증대시켜 보고이익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문현주(2004)는 은행의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1995년을 기점으로 2001년까지 7개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

를 이용한 이익조정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³⁰⁾ 그는 은행의 경영자들이 수익성 지표에 관심을 두고 재량적 항목을 반영하기 전인 조정 전 이익수준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보고이익의 변동을 감소키는 이익조정을 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은행의 경영자들은 “이익조정 전 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이익유연화를 위해 재량성이 높은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게(적게)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최효순(2003)의 연구와 달리 은행이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동 대출채권을 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으로 구분하여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의 재량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활용정도가 소매금융인 가계대출보다 더 강함을 볼 수 있었다.

김경미(2004)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상호저축은행의 399개 재무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보고이익이 전년도에 하락한 경우 재량적 항목인 대손상각비를 적게 인식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또한 보고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대손상각비를 적게 인식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검증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대손상각비를 전년도보다 적게 적립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희(2005)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재

- 30) 문현주가 재량성이 높은 대손상각비와 비재량적초과이익 간의 관계를 통해 은행의 이익유연화 현상을 검증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PROV_{i,t} = \alpha_0 + \alpha_1 AEARN_{i,t} + \alpha_2 LOAN_{i,t} + \alpha_3 NPL_{i,t} + \alpha_4 ALLOW_{i,t-1} + \alpha_5 AEARN_{i,t} * D + \alpha_6 SIZE_{i,t} + \alpha_7 \Delta LOAN_{i,t} + \alpha_8 \Delta NPL_{i,t} + \alpha_9 TIME_{i,t} + \epsilon_{i,t}$$

변수 정의 -

PROV : 대손상각비/총자산, AEARN : 비재량적이 초과이익(= 비재량적이이익 - 동일 연도 단순산업평균 비재량적 이익)/총자산[비재량적이이익 = 당기순이익+대손상각비+법인세비용], LOAN : 대출채권/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대출채권, ALLOW : 기초 대손충당금/대출채권, SIZE : 총자산의 자연대수, D : 더미변수[D=1 if AEARN>0, D=0 if AEARN<0], ΔLOAN : 대출채권의 변화(LOAN_{i,t} - LOAN_{i,t-1})/총자산, ΔNPL : 무수익여신의 변화(NPL_{i,t} - NPL_{i,t-1})/대출채권, TIME : 더미변수(1 if 1995년~1997년, 0 if 1998년~2001년)

량권이 높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관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대손상각비와 수정보고이익(상각전 보고이익)의 관계에 대한 회귀식에서 “수정보고이익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통계값”을 보여 수정보고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의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보고한 상호저축은행도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손상각비를 재량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한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전체 표본의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대손상각비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지현미·박홍조(2006)는 저축은행의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443개 재무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저축은행이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에 감독당국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감소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조정수단으로 대손충당금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에 감독당국에 보고하였던 자기자본비율보다 감소할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의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태호(2009)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역농협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조정에 의하여 순자본비율 관리와 이익평준화를 행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순자본비율관리 가설에서는 “순자본비율이 낮은 농협 상호금융의 경영자는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이익평준화 가설에서 “대손충당금설정 전 보고이익이 높은(낮은) 지역농협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증가(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는 지역농협들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재량적으로 조정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이익평준화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선순용(2010)은 저축은행의 경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대상으로 저축은행이 이익조정을 위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비재량적초과손익(±)이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²⁾ 이러한 결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이익조정 전 비재량적초과이익에 기초하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조정하는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관리 측면의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검증변수인 자기자본비율 간에 유의한 음(-)의 회귀값”을 나타냄으로써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본관리를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이익유연화 및 자본관리를 위하여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

- 31) 강태호가 지역농협의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순자본비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DLLP_{i,t} = \alpha_0 + \alpha_1 NCBL_{i,t} + \alpha_2 GROUP1_{i,t} + \alpha_3 GROUP2_{i,t} + \alpha_4 GROUP3_{i,t} + \alpha_5 AGRIBIZ_{i,t} + \alpha_6 LOAN_{i,t} + \alpha_7 SUBL_{i,t} + \alpha_8 SIZE_{i,t} + \alpha_9 YEAR_{i,t} + \epsilon_{i,t}$$

변수 정의 -

DLLP :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 NCBL : 대손충당금설정 전 순자본비율, GROUP : 유형별 더미변수, AGRIBIZ : 경제사업부문 비중, LOAN : 대출금 규모, SUBL : 고정이하 여신액 규모, SIZE : 기업규모, YEAR : 연도별 더미변수

- 32) 선순용이 저축은행의 비재량적초과이익이 대손상각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PROV_{i,t} = \alpha_0 + \alpha_1 AEARN_{i,t} + \alpha_2 LOAN_{i,t} + \alpha_3 OL_{i,t} + \alpha_4 NPL_{i,t} + \alpha_5 ALL_{i,t-1} + \alpha_6 CO_{i,t} + \alpha_7 \Delta NPL_{i,t} + \alpha_8 OFA_{i,t} + \epsilon_{i,t}$$

변수 정의 -

PROV : 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대출채권, AEARN : (비재량적이익 - 동일연도 단순산업평균 비재량적이익)/대출채권[비재량적이익 = 법인세공제전순이익 + 대손상각비], LOAN : 대출채권/총자산, OL : 정상·요주의 여신/총자산, NPL : 무수익 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응), ALL : 기초대손충당금/대출채권, CO : 기중대손상각액/대출채권, Δ NPL :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변화율, OFA : 비업무용 부동산/대출채권

액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송현(2016)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저축은행(176개)과 지정되지 않은 저축은행(633개)으로 구분하여 이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자산건전성 및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의 경우 독립적인 회계감사업무가 대손충당금적립 행태에 영향을 미쳐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저축은행에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 제도가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3.2.2 해외 선행연구

McNichols and Wilson(1988)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설정액을 이용하여 기업이 이익을 평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대손설정액(비재량적 대손설정액)은 기초 대손충당금과 2개 연도의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이를 실제 대손설정액에서 차감하여 재량적 대손설정액을 계산”하였다. 총자산수익율을 기준으로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익관리여부를 검증해 보았는데, 포트폴리오 순서와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부분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매우 좋거나 매우 저조한 경우에 재량성이 있는 대손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보고이익이 매우 높은 경우 이익을 하향조정하여 이익평준화를 도모하고, 보고이익이 매우 낮은 경우 당해 연도의 이익을 더욱 낮게 보고하여 다음 연도의 이익을 높이하고자 하는 현상(big bath)으로 볼 수 있다.

Ma(1988)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 100개의 미국은행 패널자료를 가지고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유연화를 시도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재량적 부분과 비재량적 부분의 합으로 보고 대손상각비와 무수익여신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은 잔차(residual)를 경영자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이익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해 이익을 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Moyer(1990)는 감독당국의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하여 경영자가 단순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익조정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익조정 수단으로 대출금의 대손상각비, 대출채권 상각,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회계처리의 수정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의 경영자들은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회계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이익유연화 현상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arfield and Linsmeier(1992)는 1980년부터 1985년 기간 중 745개의 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관리 또는 이익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이 활용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익관리는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법인세관리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은행 경영자들이 유가증권처분손익의 인식시기를 조절하여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Beatty et al.(1995)은 1987년과 1990년 두 해의 총 638개 은행을 표본으로 은행이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에 대응하고, 법인세비용과 보고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거래 또는 발생계정의 시기나 규모 등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세부수단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대손충당금의 설정, 유가증권매각손익의 인식, 퇴직연금 관련 거래, 신주 또는 차입 등의 외부자금조달과 같은 다섯 가지 실행수단"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자본 변수는 대출채권의 대손상각 처리와 대손충당금 설정, 그리고 증권의 신규발행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ins et al.(1995)은 은행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설정액, 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익, 대출중도해지수수료, 보통주, 우선주, 배당금 등 7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보고이익 및 법인세관리

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각각 개별발생액 접근법(specific accruals approach)을 이용하였는데 검증결과,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Kim and Kross(1998)은 1989년 자본비율 산정요소가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미국 은행들의 자본관리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1989년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자본비율의 증가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1989년 이후에는 감소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자본관리 여부를 검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 상위집단에서는 자본관리 현상에 대해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반면, 자기자본비율 하위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검증되었다. 자기자본비율 하위집단의 경우 자본비율 산정요소가 변경된 1989년 이후가 1989년 이전 보다 대손충당금설정액을 더 적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최효순 (2003)	- 국내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조정하여 이익을 증대(감소)시킬 경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익 수준을 결정하려는 유인이 있음 -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고정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재량성이 있는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증대시킴
문현주 (2004)	- 국내 은행의 경영자들은 이익조정 전 비재량적이익에 기초하여 이익관리를 하고 있음. 즉 이익조정 전의 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재량성이 큰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이(적게) 보고함 - 기업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활용정도가 가계대출금 보다 더 강함 - 기말 추가 인식 대손상각비의 증가는 미래의 잠재손실에 대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나 미래의 이익이 양호하다는 신호 역할을 함
김경미 (2004)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대손상각비를 전년보다 적게 보고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하지 않음
박연희 (2005)	- 저축은행은 수정보고이익(상각전 보고이익)이 하락할 경우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함 - 전체표본의 수정보고이익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보고한 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함 -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체표본의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 이는 대손상각비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지현미 · 박홍조 (2006)	- 감독당국에 전기에 보고한 자기자본비율보다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함 -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의 자기자본비율 보다 낮을수록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더 많이 감소함
강태호 (2009)	- 지역농협의 경영자는 순자본비율이 낮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자본관리 가설을 지지함 - 대손충당금 설정 전 보고이익이 높은(낮은) 지역농협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라는 이익평준화 가설을 지지함
선순용 (2010)	- 저축은행 경영자들은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인 이익조정 전의 비재량적이익 수준에 따라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음 - 무수익여신은 대손충당금설정액과 높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대손충당금설정액에 큰 영향을 미침 - 저축은행은 재량성이 있는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본관리를 하고 있음
송현 (2016)	- 저축은행의 감사인지정제도가 대손충당금 적립행태에 영향을 미쳐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등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에서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확인
McNichols and Wilson (1988)	- 기업의 경영성과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쁜 경우에는 경영자가 이익을 하향 조정함 - 이익이 매우 낮은 경우 다음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이익을 더욱 낮게 보고하는 현상(big bath)으로 해석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Ma (1988)	- 재량적인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이익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가지고 이익을 유연화하고 있음
Moyer (1990)	- 대손상각비, 대출채권 상각, 유가증권처분 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실증분석 결과, 최저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의 경우 규제회피를 위한 회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익평준화 현상은 검증하지 못함
Warfield and Linsmeier (1992)	- 재량적 항목인 유가증권처분손익이 법인세관리 또는 이익관리에 재량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익관리는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법인세 관리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함
Beatty et al. (1995)	- 은행이 자기자본규제에 대응하고, 법인세비용 및 보고이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반 회계거래나 발생계정의 시기나 규모 등을 조정하였는지 분석할 결과, 자기자본변수는 대출채권의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증권의 신규 발행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침
Collins et al. (1995)	- 은행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처분손익, 대손충당금설정액 등 7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자본관리, 이익관리, 법인세관리 현상을 검증하였으나,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지 못함
Kim and Kross (1998)	- 1989년 자본비율 산정 요소가 변경됨에 따라 미국 은행들의 자본관리 현상을 분석한 결과, 자본비율 하위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검증되었으며, 1989년 이전에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과대 보고함

3.3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연구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고경영자 교체는 큰 관심사항이고 경영자 교체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이익조정에 관한 외국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연구의 경우 최고경영자 교체연도³³⁾의 이익조정 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경우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사례를 보면, 많은 연구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음(-)의 이익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부에서는 최고경영자 교체유형에 따라 양(+)의 이익조정 증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음(-)의 이익조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3.3.1 국내 선행연구

정규언(1992)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비기대이익, 비기대총발생액 및 비기대유동발생액에 기초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신임경영자에 의한 이익이연행위를 검증하였다. 그는 “신임경영자가 자신의 예상 재임기간동안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예상 재임기간 후반기를 위한 이익 유보(留保) 행위로서 부임한 첫 해에 음(-)의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이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영자 변경여부와 변경시점, 그리고 경영자의 유형(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인)을 독립변수로, 랜덤워크모형에 따라 측정된 비기대이익, 비기대총발

33)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을 연구한 국내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를 정의함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직명이 대표이사, 사장, 회장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어 기업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상 ‘대표이사’라는 직명을 가지는 임원 중 직급이 최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등기 임원에 대한 직급순위는 KISLINE의 경영진 자료를 참고하였다.

생액 및 비기대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가 변경된 연도의 비기대이익, 비기대총발생액, 비기대유동발생액이 감소하였으며 회계기간 초에 경영자가 변경된 경우보다 회계기간 중간에 경영자가 변경된 경우에 이익과 발생액의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아영 등(2007)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고경영자 교체가 이루어진 총 25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나타나는 신임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의한 이익조정 현상을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아영 등(2007)은 신임경영자의 경우 교체연도에 “성과가 저조한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불필요한 자산 등을 과감하게 상각하는 등의 소위 ‘big bath’를 통해 미래의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자신의 미래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서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신임경영자가 저조한 경영성과의 책임을 전임경영자에게 전가시키고 향후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부임 첫 해에 발생액에 기초하여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아영 등(2009)은 앞서 연구했던 이아영 등(2007)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 중에서 이익조정의 극단치를 보인 기업을 제거한 후 총 239개의 표본을 가지고 신임경영자의 영입유형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검증하였다. 즉,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될 때 기업 밖에서 영입한 경우와 기업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익조정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외부영입 또는 내부영입에 따른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경영자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교체사유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에서 영입한 신임경영자의 경우 내부출신의 신임경영자에 비해 “취임 첫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전임경영자가 사내에 잔류하지 않거나 교체 직전연도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일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곽영민·최종서(2011)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의 317개 표본기업을 4가지 형태의 최고경영자 교체유형³⁴⁾으로 구분하여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 측정치들의 평균이 0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전임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신임경영자가 기업 외부에서 영입되는 경우에는(type II), “교체연도에 양(+)의 이익조정 증거”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임경영자가 강제로 사임하고 신임경영자가 기업 내부에서 승진되는 경우(type III), “전임경영자의 재임 마지막년도에는 양(+)의 이익조정이 관찰되는 반면, 신임경영자의 취임 첫해에는 음(-)의 이익조정이 관찰”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기업 내부출신의 신임경영자가 승계한 교체유형(type I)과 전임경영자가 강제로 사임하고 기업 외부에서 신임경영자가 영입된 교체상황((type IV)에서는 어떠한 이익조정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아영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될 경우 신임경영자가 이익을 더욱 하향조정한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이다.

김민석 등(2012)은 국민은행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big bath 현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1998년, 2004년, 2010년 3차례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국민은행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세 차례 모두 교체연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하고, 그 이듬해에는 경영성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재무성과의 증감변동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은행의 대손상각률 및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의 변동이 경쟁은행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4) 전임경영자의 퇴임유형과 신임경영자의 영입유형을 결합하여 최고경영자의 교체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Internal Promotion	External Recruitment
Voluntary Turnover	Type I (Voluntary x Internal)	Type II (Voluntary x External)
Forced Turnover	Type III (Forced x Internal)	Type IV (Forced x External)

심동석·안창호(2015)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7개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 대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회귀 값을 보이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적 기업환경에서 신임경영자의 big bath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big bath 현상을 분석한 국내외 모든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이고, 이는 한국에서 일부 신임경영자의 경우 유리한 자금조달과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3.3.2 해외 선행연구

Moore(1973), Strong and Meyer(1987)는 공통적으로 경영자가 교체되는 시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은 신임경영자가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write-down), 충당금 설정, 기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신임경영자가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며, 향후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이기 위해 자의적 상각을 크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DeAngelo(1988)는 최고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협을 느끼는 위임장경쟁(proxy contests)³⁵⁾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이익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임경영자가 위임장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간에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선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신임경영자가 전임경영자와 반대세력일 때 신임경영자는 차기의 반전된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교체연도에 적극적으로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Dechow and Sloan(1991)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상회하는 기업 중 자료입수가 가능한 58

35)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그룹 간에 주주의 위임장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벌이는 경쟁으로 주로 본인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기 직전연도에 전임경영자가 연구개발비를 삭감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자는 임기의 마지막 연도에 성과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Pourciau(1993)는 최고경영자 교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교체된 경우와 비정상적으로 교체된 경우로 구분하고, 비정상적인 교체상황에서 이익조정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상적 교체 하에서는 전임경영자와 신임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신임경영자가 전임경영자의 실적을 부정하는 형태로 이익조정을 실시할 유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결과, “비정상적 교체 하에서 신임경영자는 부임 첫해에 특별항목과 발생액을 이용하여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임경영자가 재임기간 마지막 년도에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이다”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Murphy and Zimmerman(1993)은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시점을 전·후하여 발생액, 연구개발비, 광고비, 자본투자 등과 같은 재량적 변수의 추세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변화가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에 따라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저조한 경영성과에 의해 유발되는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생액과 연구개발비 지출변동 등의 재량적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영자 교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및 당기와 전기의 경영성과를 설명변수로 이용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에서 “발생액 등 재량적 변수들이 당기 및 전기의 경영성과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발생액과 연구비 지출 등이 줄어드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저조한 경영성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rancis et al.(1996)은 최고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산상각방법의 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채고자산, 영업권,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자산상각방법과 구조조정비의 계상수준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기업의 재량적 자산상각이 경영자가 교체되는 연

36) 이와 달리 Butler and Newman(1989), Gibbons and Murphy(1992)의 연구에서는 전임경영자가 임기의 마지막 연도에 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은 재량적 자산상각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은 상각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Wells(2002)는 호주 기업의 최고경영자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한 결과, “신임경영자가 교체연도에 보고이익을 감소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신임경영자는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보고이익을 더 하향 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표 13>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정규언 (1992)	-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연도에 비기대이익, 비기대충발생액, 비기대유동발생액이 감소함 - 경영자가 회계기간 초에 변경된 경우보다 회계기간 중간에 변경된 경우 발생액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남
이아영 등 (2007)	-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연도에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냄 - 신임경영자는 경영자 교체연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함
이아영 등 (2009)	- 기업 외부에서 영입된 신임경영자는 기업 내부출신의 신임경영자에 비해 취임연도에 보다 적극적인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함 - 전임경영자가 기업 내에 잔류하지 않거나 교체 직전연도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우 보다 현저하게 나타남
곽영민·최종서 (2011)	- 경영자가 자발적 사임/외부영입의 경우 외부영입 신임경영자가 교체연도에 양(+)의 이익조정을 수행함 - 최고경영자가 강제 사임/내부승진의 경우 전임경영자의 재임 마지막년도에는 양(+)의 이익조정을, 신임경영자는 취임 첫해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함 - 최고경영자가 강제 사임/외부영입, 자발적 사임/내부영입의 경우 이익조정 현상은 관찰되지 않음
김민석 등 (2012)	- 국민은행의 이익조정 사례연구에서 경영자가 교체된 세 차례 모두 교체연도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다음 회계기간의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됨
심동석·안창호 (2015)	-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전체표본에 대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한국의 기업환경 하에서는 신임경영자의 big bath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Moore(1973), Strong and Meyer (1987)	- 신입경영자가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기타 회계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
DeAngelo (1988)	- 신입경영자가 전임경영자와 반대세력일 때 신입경영자는 취임 첫해에 적극적으로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하고 그 이듬해에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고함
Dechow and Sloan (1991)	- 최고경영자는 임기의 마지막 연도에 회계이익에 기초한 경영 성과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킴
Pourciau (1993)	- 최고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될 경우 신입경영자는 취임 연도에 발생액과 특별항목을 활용하여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함 - 전임경영자가 재임기간 마지막 연도에 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
Murphy and Zimmerman (1993)	- 최고경영자 교체된 시점의 재량적 변수들은 당해 연도 및 직 전연도의 경영성과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임 - 경영자 교체사유가 저조한 경영성과에 기인하는 경우 신입경영자는 이익을 하향조정함
Francis et al. (1996)	- 경영자가 교체되는 연도에 기업의 재량적 자산상각이 많이 발생함 - 투자자들은 재량적 자산상각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Wells (2002)	- 신입경영자가 교체연도에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함 -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된 상황 하에서 신입경영자가 이익을 더욱 하향 조정함

3.4 이익조정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이익조정 동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익조정 연구방법으로는 대개 “총발생액 접근법”, “개별 발생액 접근법” 및 “빈도분포 접근법”으로 요약된다.

첫째, 총발생액 접근법(aggregate accruals approach)은 기업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익조정 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총발생액은 발생주의 이익인 순이익(NI)에서 현금주의 이익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을 차감해서 구한다. 이익조정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현금흐름(CFO)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적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발생액보다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총발생액(total accruals: TA)은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DA)과 비재량적발생액(nondiscretionary accruals: NDA)으로 구성되는데, 총발생액은 기업의 재무제표로부터 비교적 간단히 계산³⁷⁾할 수 있지만, 재량적 발생액(DA)과 비재량적 발생액(NDA)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 측정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재량적발생액(DA)은 총발생액(TA)에서 비재량적발생액(NDA)의 추정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NDA를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비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기 위해 여러 모형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Healy(1985), DeAngelo(1986), Jones(1991), Dechow et al.(1995)의 연구가 있다.

Healy(1985)는 “이익조정이 행하여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총발생액(TA)의 평균값을 비재량적발생액(NDA)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즉, 당해 연도의 총발생액(TA)에서 과거 수년간의 총발생액 평균을 차감하여 재량적발생액(DA)을 측정하였다. DeAngelo(1986)는

37) 순이익(NI)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에 발생액(accruals)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되는데, 발생액은 다시 유동발생액(current accruals)과 비유동발생액(noncurrent accruals)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유동발생액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전자본과 CFO의 차이이고, 비유동발생액은 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전자본의 차이이다(권수영 등, 2010).

직전연도의 발생액을 이번 연도의 비재량적발생액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즉, 당해 연도의 총발생액(TA_t)에서 전년도의 총 발생액(TA_{t-1})을 차감하여 당해 연도의 비재량적 발생액(NDA)을 측정하였다.

Jones(1991)과 Dechow et al.(1995)은 매출액의 변화(ΔREV)와 유형자산(PPE)을 이용하여 비재량적발생액(NDA)를 추정하였다. Dechow et al.(1995)은 매출액의 변동과 설비자산이 발생액을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Jones(1991)과 동일하나, 경영자가 신용판매를 통해서도 이익을 조정한다고 보아 매출채권의 변동(ΔREC)이 재량적발생액에 포착되도록 Jones모형을 수정한 모형이다.

둘째, 개별발생액 접근법(specific accruals approach)은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개별항목을 주로 이용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통상 금융회사 중 은행, 보험회사 등의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동 방법은 재량성이 높은 항목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모형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변수를 선정할 때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s)가 있을 경우 검증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며, 모형 설계가 정교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통제변수나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기도 하고,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잔차(residual)를 재량적 발생액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Beaver and Engel(1996)은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유연화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대손충당금설정액(비재량적 대손설정액)은 대손상각 금액, 무수익여신 규모, 무수익여신의 변동, 대출채권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다음 이를 실제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설정액에서 차감하여 재량적 대손설정액을 계산하였다. Collins et al.(1995)은 회귀식에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였다.

셋째, 빈도분포 접근법(frequency distribution approach)은 총발생액 접근법과 개별발생액 접근법이 갖는 중심화경향(central tendency)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표본을 여러 소구간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소구간의 평균치 또는 중위수의 분포 형태를 관찰하여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는 것으로, 보고이익이 일정한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을 통해 특정 모형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것보다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Burgstahler and Dichev(1997)는 재량적 이익조정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보고된 순이익과 그 순이익 변화의 횡단면 분포를 이용하여 이익조정 현상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개별항목을 이용한 개별발생액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별항목으로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대손상각비와 법인세비용,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합원에게 대출(자금운용액 중 대출비중 64.8%)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대부분 중앙회에 예치하는 단순한 업무구조이기 때문에 대출금과 관련이 있는 대손항목이 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³⁸⁾를 적용받는 조합 법인이고 단일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한계법인세율이 달라지는 일반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가증권처분손익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은 그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과 필요자본을 조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38) 신용협동조합, 농업·수산업·산림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표 14> 재량적발생액 측정 접근방법 요약

연구자	재량적발생액 측정 모형
<총발생액 접근법>	
Healy (1985)	$DA_{i,t} = TA_{i,t} - \sum TA_{i,t} / T (= NDA)$
DeAngelo (1986)	$DA_{i,t} = TA_{i,t} - TA_{i,t-1} (= NDA)$
Jones (1991)	$DA_{i,t} = TA_{i,t} - (\hat{\alpha}_0 + \hat{\alpha}_1 \Delta REV_{i,t} + \hat{\alpha}_2 PPE_{i,t})$
Dechow et al. (1995)	$DA_{i,t} = TA_{i,t} - \hat{\alpha}_0 + \hat{\alpha}_1 (\Delta REV_{i,t} - \Delta REC_{i,t}) + \hat{\alpha}_2 PPE_{i,t}$
<개별발생액 접근법>	
Beaver and Engel (1996)	$ALL_{i,t} = \alpha_0 + \alpha_1 CO_{i,t} + \alpha_2 LOAN_{i,t} + \alpha_3 NPL_{i,t} + \alpha_4 \Delta NPL_{i,t-1} + \epsilon_{i,t}$
<빈도분포 접근법>	
Burgstahler & Dichev (1998)	이익변수를 기준점 “0”을 중심으로 위/아래 빈도분포로 나눠 이익조정을 검증

- 변수의 정의

<총발생액접근법>

TA: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DA: 재량적발생액, NDA: 비재량적발생액

REV: 매출액, REC: 매출채권, PPE: 유형자산

<개별발생액접근법>

ALL: 대손충당금, CO: 대손상각비, LOAN: 대출채권, NPL: 무수익여신

3.5 선행연구와의 차이

금융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대손충당금설정액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량권이 작용될 수 있는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예금을 받아 대출로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여신의 회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소적립비율(1%~100%)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이 곧 대손충당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제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자산건전성 분류의 객관성 확대를 위해 분류원칙을 제시하고 각 분류단계별 예시를 두고 있으며,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여신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예상가액 상당액은 ‘고정’으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은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적립(20% 이상~100%)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경영자는 재량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예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항목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본목적은 신용협동조합의 최고경영자(이사장)가 이익조정을 위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조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지금까지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둘째,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이사장(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이사장은 일반기업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

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사장 임기는 4년이고 최장 재연임(총 12년)이 가능하다.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인 이사장 임기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 여부가 행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조합은 공동유대라는 특성 즉,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형태로 영업을 하고 감독을 받는다. 지역조합은 같은 시·군·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조합은 종교단체, 상인 등 특정 이해목적을 중심으로,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조합과 단체조합 간에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다만,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내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과 비교해볼 때 이익조정 유인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경영구조, 감독규제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넷째, 조합은 직전 연도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산 규모에 따라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자료와 함께 선출직인 이사장에 대한 정보입수³⁹⁾가 가능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을 표본선정 기간으로 하여,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고 세부적으로 공동유대별, 자산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이익조정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사장 임기형태에 따른 이익조정의 유인이 다른지를 분석하기 하기 위해 2013년 6월까지의 법상 이사장의 재연임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체표본 중 2014년~2015년 중 이사장이 재연임된 표본⁴⁰⁾은 제외하였다.

아울러 추가분석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39) 조합 이사장 이름, 재임기간, 초임·연임 및 재연임 여부, 재임기간 중 교체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 여부 또는 보궐선거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 여부 등

40) 2013년 6월 이후 법상 재연임이 허용됨에 따라 이사장이 재연임된 조합은 222개 신용·연도이다.

IV. 연구 설계

금융회사의 이익조정은 통상 이익유연화, 자본관리, 법인세관리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임에 따라 단일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한계법인세율이 달라지는 일반기업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당기순이익과세⁴¹⁾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고이익과 과세표준이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법인세관리를 위한 이익동기유인이 미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익유연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자기자본관리 측면에서도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비재량적초과이익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간의 관계를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라 이익조정이 달라지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신협의 이사장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뽑는 선출직으로 조합이라는 특성상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지역 토착세력이 이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사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신협 이사장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대비하여 재선(再選)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영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인 이익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사장 임기형태와 관련하여 재량적 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태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감독당국 또는 신협중앙회로부터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핵심감독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 순자본비율이 경영지도비율인 2%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당국이나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

4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 법인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법인세비용 차감 전의 당기순손익과 수익사업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에 단일 법인세율(12%)을 적용하고 있다.

에서 경영진 면담, 재무상태 개선계획 마련 등 경영간섭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량적 항목을 이용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추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검증방법은 선행연구와 같이 개별발생액 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량적 활용이 높은 개별 항목과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예금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조합의 특성상 총수익의 68.5%를 차지하는 대출채권의 이자수입이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익조정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관련 항목들을 회귀식에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2015년 말 현재 영업 중인 910개 신용협동조합 중 직장조합⁴²⁾ 150개를 제외한 760개 지역·단체조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재무자료 및 비재무자료 이용이 가능한 총 7,445개 실험-연도⁴³⁾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기간 중 재무정보가 부족한 3개 실험-연도와 금융사고, 자산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손익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전체표본 중 당기순이익 상위 1%와 당기순손실 상위 1%에 해당하는 152개 실험-연도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법상 연임(2013년 6월 이후 재연임 가능)이 가능했던 유효표본 7,223개 실험-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14년~2015년 중 이사장이 재연임된 222개 실험-연도는 제외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로 이익조정관련 기본가설과 보조가설 2개 및 최고경영자 교체 관련 기본가설과 보조가설 3개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추가분석을 통해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한 자본관리 여부

42) 직장조합의 이사장은 같은 직장 내 임직원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직장 내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에 비해 이익조정 유인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경영구조, 감독규제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43)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 연도의 실험을 표본으로 함에 따라 표본의 개수를 표시함에 있어 ‘연도-실험’으로도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의 표시방법을 따랐다.

도 알아보았다.

예금자 보 호	예금자보호법(2003년까지) → 신탁중앙회 자체기금(2004년부터)
외부감사 대 상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조합
연구 목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현상
연구 가설	<가설 1> 대손충당금을 이용 한 이익조정(이익 유연화) 여부 <가설 2> 이사장 임기형태에 따라 이익조정의 차이 여부 <추가분석> 순자본비를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하는지 여부
종속 변수 (산식)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대손상각비) $[\text{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 = \text{기말 요적립 대손충당금 잔액} - \text{미상각잔액(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 \text{기중 대손상각액)}]$
연구 내용	■ 이익유연화 관련: <가설 1>, <가설 1-a>, <가설 1-b> ■ 경영자교체 관련: <가설 2>, <가설 2-a>, <가설 2-b>, <가설 2-c> ■ 추가분석(자본관리 관련)
연구 표본	10년(2006년~2015년)간의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 자료 * 직장조합 제외
검증 방법	① 단변량 분석 ② 상관분석 ③ 다중회귀분석

<그림 1> 실증분석의 체계도

4.1 연구가설의 설정

4.1.1 이익유연화

금융회사는 각 금융관련 법령에서 보유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최저적립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이 적법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는 감독당국이나 신탁중앙회에서 업무보고서 심사,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의 최소적립비율 보다 적게 적립하는 형태의 이익조정 가능성은 낮지만, 신용협동조합이 임의로 법규상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행태의 이익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는 경영자가 회계기간 간에 안정된 보고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우 보고이익을 증대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즉,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고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면 보고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경영자가 이러한 이익유연화를 하고자하는 동기는 경영자 보상이나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 등 회계수치를 이용하는 계약에서 이득을 얻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 높은 신임도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익유연화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주로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 등의 경우 이익이 높은 경우 이익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며(McNichols and Wilson, 1988; Ma, 1988; 문현주, 2004; 박연희, 2005; 강태호, 2009),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익조정 전 비재량적초과이익

(±)이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선순용, 2010). 또한 은행 등은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을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oyer, 1990; Kim and Kross, 1998; 강태호, 2009; 선순용, 2010).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4년 임기의 이사장(조합장)이 경영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경영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보고이익에 관심이 많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총자산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2015년 12월말 대출금 비중 64.8%)에 따라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하여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간 중 신용협동조합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첫 번째 가설에서는 비재량적초과이익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에서는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의 임기 형태에 따라 비재량적초과이익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이 교체된 연도에 신임이사장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취임년도에 이익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비재량적초과이익을 제외한 여타 변수들은 일종의 통제변수의 성격을 갖는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비재량적초과이익을 가지고 조합원 신임도 등을 고려하여 보고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 재량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즉, 당초 계획보다 보고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보고이익을 줄이기 위한 이익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것임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기본가설로 설정한다.

<가설 1> 신용협동조합의 비재량적 초과이익(±)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라는 조합원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가 있다. 지역조합은 같은 시·군·구에 속한 조합원 중심이고, 단체조합은 종교단체, 시장상인 등 특정목적에 기초한 조합원 중심이기 때문에 단체조합의 조합원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조합의 경영자는 조합원 신임도 등을 고려하여 단체조합에 비해 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이익조정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가설 <가설 1-a>을 설정한다.

<가설 1-a>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 규모는 지역조합이 단체조합에 비해 클 것이다.

그리고 대출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자산중 대출채권 비중(2015년 12월말 64.8%)이 높아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용협동조합은 직전연도 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반대로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가설 <가설 1-b>을 설정한다.

<가설 1-b>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 규모는 당해 연도말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이 300억 원 미만인 조합에 비해 클 것이다.

4.1.2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경영자는 자신의 선택가능한 회계적 재량권을 가지고 보고이익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익조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시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교체시점을 염두에 두고 사적이익 측면에서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임경영자는 자신의 마지막 재임기간에 보수수준을 증대시키거나(Dechow and Sloan, 1991), 퇴임 후의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동기를 갖는 반면(곽영민 등, 2011), 신임경영자는 미래에 양호한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임년도의 이익을 하향조정하거나(Moore, 1973; Strong and Meyer, 1987; 이아영 등, 2007), 취임 첫해에 자신의 경영능력의 우수함을 과시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동기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곽영민 등, 2011).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이사장(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일반기업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경우 전문성 및 내부통제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⁴⁴⁾ 이사장의 경우 공동유대 내 토호세력 중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을 맡을 뿐만 아니라 간부직원 임명, 전결권한 행사, 예산권 보유 등 많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히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매년 야기되기도 한다.⁴⁵⁾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과 관련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재임기간 중 안정적인 성장을 경영목표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익조

44)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탁의 금융사고 중 이사장 및 간부직원이 연루된 비중이 30.1%로 높은 편이다.(은봉희, 2015)

45) 조합 선거운동 관련 과열·혼탁, 향응제공, 우호직원 특별승진, 차기 이사장 내정·결탁 등의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 4년의 이사장은 1차, 2차 연임이 가능하여 최대 12년까지 재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이사장)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대비하여 초임 재임기간 4년 동안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사장은 초임임기 4년 이후 연임(4년)이 가능함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초임 이사장은 초임 재임기간(4년) 중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을 목적으로 한 이익조정 유인이 연임기간(4년)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연임의 경우 2013년 6월 이후 법상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초임 재임기간과 연임 재임기간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⁴⁶⁾

임기 초임(4년)				임기 연임(4년)			
1yr	2yr	3yr	4yr	1yr	2yr	3yr	4yr
검증대상							

주1) 초임의 경우 중도에 교체된 경우를 포함하며, 연임의 경우 재연임은 제외함

주2) 초임기간 4년의 표본은 5,189개 신흥-연도, 연임기간 4년의 표본은 2,034개 신흥-연도임

<그림 2>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과 연임기간 비교

<그림 2>와 같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과 연임기간(4년)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가설로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에는 연임기간(4년)에 비해 이익조정이 클 것이다.

46) 2013년 6월 이후 이사장이 재연임 된 222개 신흥-연도는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과 연임기간의 이익조정 규모를 비교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 즉 임기 4년차에 이익조정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협동조합은 4년마다 임원 선출을 위해 치러지는 총회의 경우 분석대상 760개 지역·단체조합의 총회 개최시기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2016년 초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한 조합의 경우 2015년이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이다.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5년은 241개 조합이 해당되고(이들 조합은 2016년 초 총회 개최), 이들 조합은 2011년 및 2007년이 각각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가 된다.(이들 조합은 각각 2012년 초 및 2008년 초 총회 개최)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장 임기를 토대로 임기 마지막 해의 도래시기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연도별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 도래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지역조합	214	76	363	11
단체조합	27	14	48	7
계	241	90	411	18
직전 해당년도	2011년 2007년	2010년 2006년	2009년	2008년
총회개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는 각 해당연도의 다음 해 초(2월~3월 경) 개최			

주) 이사장 보궐선거(신임이사장은 전임이사장의 잔여 임기 재임) 실시여부는 미고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음 선거에서 사적이익인 재선(再選)을 목적으로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에 초임의 다른 연도 및 연임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을 크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장 임기 마지막 연도를 검증함에 있어 초임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연임의 마지막 연도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2차 연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우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조정 유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임기 초임(4년)				임기 연임(4년)			
1yr	2yr	3yr	4yr	1yr	2yr	3yr	4yr
			검증대상				

주1) 초임의 경우 중도에 교체된 경우를 포함하며, 연임의 경우 재연임은 제외함

주2) 초임기간 4년차는 1,423개 실험-연도, 그 외 연도는 5,800개 실험-연도임

<그림 3>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와 다른 연도 비교

<그림 3>과 같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와 초임 및 연임 임기의 다른 연도와의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보조가설로 <가설 2-a>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a>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는 이사장 임기의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클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가설 <가설 2>와 보조가설 <가설 2-a>와 같은 맥락에서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와 연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 간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a>에서는 이사장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는 2013년 6월 이전까지 재연임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해당연도를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만약 이사장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의 이익조정이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의 이익조정 보다 크게 나타나거나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의 이익조정 현상이 별로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는 2013년 6월 이전까지 이사장 재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성과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기 초임(4년)				임기 연임(4년)			
1yr	2yr	3yr	4yr	1yr	2yr	3yr	4yr
			검증대상				검증대상

주1) 초임의 경우 보궐선거를 포함하며, 연임의 경우 재연임은 제외함

주2) 초임 4년차는 1,423개 신흥-연도, 연임 4년차는 385개 신흥-연도임

<그림 4> 이사장 임기 초임 및 연임의 마지막 해 비교

<그림 4>와 같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와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의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보조가설로 <가설 2-b>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b>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임기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는 연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클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신임경영자에 의한 이익조정 행위를 검증하였는데, 신임경영자가 부임 첫해에 음(-)의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규언, 1992; 이아영 등, 2007). 그리고 광영민·최종서(2011)는 최고경영자 교체유형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한 결과, 전임경영자가 스스로 사임하고 신임경영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type II) 신임경영자 부임 첫해에 양(+)의 이익조정 증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사임한 전임경영자가 사임을 하더라도 기업 내에 남아 고문직 등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임경영자는 전임경영자의 경영성과를 부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취임 첫해에 자신의 경영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전임경영자가 강제 사임하고 신임경영자가 회사내부에서 승진되는 경우(type III) 신임경영자의 취임 첫해에 음(-)의 이익조정이

관찰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경영성과의 부진 책임을 전임경영자의 탓으로 돌리고 미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부임 첫해에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선거를 통해 이사를 선출하는데, 이사 후보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자발적 사임이 아닌 강제적 사임에 해당하고, 당해 조합 내 조합원 중에서 이사가 선출됨에 따라 조합 내부승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거에서 패배한 이사는 조합에 남아 조합원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협동조합 이사가 교체된 경우 신임 이사는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교체년도 즉, 부임 첫해에 임기의 다른 해에 비해 재량적 항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사장 교체연도 [초임]				이사장 비교제연도 [연임]			
1yr	2yr	3yr	4yr	1yr	2yr	3yr	4yr
검증대상							

주1) 초임의 경우 중도에 교체된 경우를 포함하며, 연임의 경우 재연임은 제외함

주2) 이사장 교체연도(1yr)의 표본은 1,295개 실험-연도, 비교제연도(초임 y2~y4 및 연임 y1~y4)의 표본은 5,928개 실험-연도임

<그림 5>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非)교제연도 비교

<그림 5>와 같이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교제연도간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가설로 <가설 2-c>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c>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교체연도(신임 이사장의 임기 첫 해)에는 비교제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클 것이다.

4.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실시여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기능이 예금자보호법에서 신협중앙회 자체기금으로 전환된 2004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4년 이후 신용협동조합의 재무 및 비재무자료 입수가 가능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연간을 표본 선정기간으로 하여 결산기인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자료와 업무보고서 및 신협중앙회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2015년 말 영업 중인 지역·단체조합 760개를 대상으로 전체표본 7,600개 신협-연도를 추출하였다. 조합 형태별로는 지역조합이 6,442개 신협-연도로 전체표본의 84.8%를 차지하고, 단체조합이 1,158개 신협-연도로 전체표본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표본 7,600개 신협-연도 중 부실조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시계열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변수가 있는 3개 신협-연도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법인세공제전 순이익과 대손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인 비재량적이익에서 동일연도 단순산업평균 비재량적이익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금융사고 발생,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일시적 이익 또는 손실 발생 등의 영향으로 극단치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 각 상위 1%에 해당하는 표본(각 76개 신협-연도)을 제외하였다. 이를 감안할 경우 본 연구의 검증 유효표본 수는 총 7,445개 신협-연도이다.

연구기간의 유효표본 7,445개 신협-연도 중 지역조합은 6,303개 신협-연도로 유효표본의 84.7%를, 단체조합은 1,142개 신협-연도로 유효표본의 15.3%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표본의 지역·단체조합 형태별 비중과 전체표본의 지역·단체조합 형태별 비중이 비슷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라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상 연임이 가능했던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연임이 허용(2013년 6월)된 이후에 이사장이 재연임된 표본은 제외하였다. 이는 재연임이 허용된 표본을 포함할 경우 다음선거에서 대비하려는 사적이익이 혼재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연임만 가능한 경우 초임기간과 연임기간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만약 분석대상에 재연임 표본까지 포함할 경우 이사장의 이익조정 유인이 연임 또는 재연임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사장 임기형태에 따라 이익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유효표본 7,445개 실험-연도 중 2014년~2015년 기간에 이사장이 재연임된 222개 실험-연도를 제외한 7,223개 실험-연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6> 표본의 선정

(단위: 개)

구분/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전체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0
지역	623	628	629	633	638	645	655	662	663	666	6,442
단체	137	132	131	127	122	115	105	98	97	94	1,158
자료부족			(1)	(1)	(1)						(3)
지역			(1)	(1)							(2)
단체					(1)						(1)
극단치*	(12)	(6)	(8)	(13)	(16)	(21)	(16)	(24)	(17)	(19)	(152)
지역	(10)	(6)	(7)	(11)	(13)	(19)	(14)	(23)	(16)	(18)	(137)
단체	(2)		(1)	(2)	(3)	(2)	(2)	(1)	(1)	(1)	(15)
최종표본	748	754	751	746	743	739	744	736	743	741	7,445
지역	613	622	621	621	625	626	641	639	647	648	6,303
단체	135	132	130	125	118	113	103	97	96	93	1,142

* 전체표본 중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 각 상위 1%

4.3. 연구모형의 설정

4.3.1 이익유연화 관련 <가설 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본 연구가설 <가설 1> 검증을 위해서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개별항목으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설정하였다. 신용협동조합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이 당해 연도의 추가 인식 대손충당금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각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기존에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리하고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결산기말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기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가설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문현주(2004)가 국내은행의 이익조정 현상을 연구한 모형⁴⁷⁾과 선순용(2010)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현상을 연구한 모형⁴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1})$$

변수의 정의 :

$PROV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비중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총자산)

$AEARN_{i,t}$: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비재량적초과이익 비중 (비재량적초과이익/총자산)
비재량적초과이익 = 비재량적이익 - 동일연도 단순산업평균 비재량적이익
비재량적이익 = 법인세공제전순이익+대손상각비

$LOAN_{i,t}$: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대출채권비중 (대출채권/총자산)

47) 문현주의 모형식은 본 논문 37쪽 참조

48) 선순용의 모형식은 본 논문 47~48쪽 참조

$OL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정상·요주의여신 비중 (정상·요주의여신/총자산)
 $NPL.Rate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무수익여신비율(순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응)
 $B.ALL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초대손충당금 비중 (기초대손충당금/총자산)
 $CO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중 대손상각액 비중 (기중 대손상각액/총자산)
 $\epsilon_{i,t}$: 오차항

또한 보조가설 <1-a>의 지역조합과 단체조합 간에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조합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더미변수를 (식 1)에 추가하였다.

$$\begin{aligned}
 PROV_{i,t} =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Type_{i,t} + \beta_3 Type_{i,t} * AEARN_{i,t} \\
 &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1-1})
 \end{aligned}$$

변수의 정의 : (식 1) 참조

더미변수 $Type_{i,t}$ 는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지역조합이면 ‘1’, 아니면 ‘0’

그리고 보조가설 <1-b>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 크기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이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 연도 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1’, 300억 원 미만이면 ‘0’의 더미변수를 (식 1)에 포함하였다.

$$\begin{aligned}
 PROV_{i,t} =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Size_{i,t} + \beta_3 Size_{i,t} * AEARN_{i,t} \\
 &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1-2})
 \end{aligned}$$

변수의 정의 : (식 1) 참조

더미변수 $Size_{i,t}$ 는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1’, 아니면 ‘0’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사용하고, 설명변수는 관심변수인 비재량적초과이익 등을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종속변수 $PROV_{i,t}$ 는 i신협의 t년도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비중을 나타낸다. 즉 i 신협이 t 년도에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할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AEARN_{i,t}$ 는 i 신협의 t 년도 비재량적초과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의 대리변수로 재량성이 높은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과 법인세비용 및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이익에 반영하기 전인 비재량적이익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모두 신용협동조합임을 고려하여 초과이익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비재량적이익은 당기순이익에 대손상각비와 법인세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하였으며, 규모에 따른 이익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비재량적초과이익은 비재량적이익에서 동일연도 신협 전체의 단순산업평균 비재량적이익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만일 이익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협이 이익유연화를 목적으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재량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비재량적초과이익의 기대부호는 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간의 관계에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면, 이는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줄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할 것이므로 두 변수의 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은 대출채권, 무수익여신, 기초대손충당금, 기중대손상각액 등 네 가지 항목에 주로 영향을 주로 받는다. 대출채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최소적립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출채권이 증가하면 통상 대손상각비도 증가하므로 대출채권($LOAN_{i,t}$)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자산의 평균 만기(듀레이션)는 2015년 기준 2.5년, 1년 초과 대출 비중은 66.8%로 대출기간이 긴 편으로 대출채권 변화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대출채권 증감률은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정상·요주의 여신($OL_{i,t}$)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동 여신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기대부호는 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채권 중 무수익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동 여신은 앞으로 대손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손상각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의 대리변수로 순고정이하여신비율⁴⁹⁾을 이용하였으며,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단체조합의 경우 조합의 특성상 특정연도 고정이하여신이 없는 조합이 많아⁵⁰⁾ 전기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전기대비 증감률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법규에서 요구한 기말 요적립대손충당금잔액에서 미상각잔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미상각잔액은 기초대손충당금에서 기중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상각잔액에 영향을 주는 기초대손충당금과 기중상각액도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⁵¹⁾, 연말에 가서 법규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이상 충당금을 적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초대손충당금($B.ALL_{i,t}$)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간에 양(+)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⁵²⁾

기중상각액($CO_{i,t}$)은 당해 연도 중 기중상각액이 많을수록 기말에 추가

49)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대출금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순고정이하여신비율} = \frac{\text{고정이하분류여신} - \text{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text{총여신} - \text{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50) 2006년부터 2015년 기간 중 특정연도 고정이하여신이 없는 조합은 총 251개 신흥-연도이며, 이 중 단체조합이 192개 신흥-연도, 지역조합이 59개 신흥-연도이다.

51) 2015년 조합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지역조합 276백만 원, 단체조합 134백만 원이며, 2015.12월 말 신흥 전체의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은 92.3%를 나타내고 있다.

52) 만약, 기초대손충당금 규모가 많을 경우 기중상각액이 없다면 기말에 추가로 적립하여 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초대손충당금과 기말대손충당금 설정액 간에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인식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므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자산 규모의 편차⁵³⁾가 크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규모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부적합 것으로 보여 모형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총 자산으로 나누어 변수들을 표준화하였다. 추가적으로 공동유대별, 자산규모 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모형에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4.3.2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관련 <가설 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연구가설 <가설 2>의 검증은 (식 1)에서 사용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가지고 이사장 임기 형태별 이익조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사장은 임기 초임기간 4년 동안 다음 선거에서의 연임을 목적으로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임기간 4년 중에는 2013년 6월까지 재연임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재연임을 하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과 연임기간(4년)간의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y1~y4)에 해당하면 '1', 연임기간(Y1~Y4)에 해당하면 '0'의 더미변수를 (식 1)에 추가하였다.

$$\begin{aligned}
 PROV_{i,t} =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First_Term_{i,t} + \beta_3 First_Term_{i,t} * AEARN_{i,t} \\
 &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_Rate_{i,t} + \beta_7 B_ALL_{i,t} \\
 &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
 \end{aligned}$$

변수의 정의 : (식1) 참조

더미변수 $First_Term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y1~y4)에 해당하면 '1', 연임기간 4년(Y1~Y4)에 해당하면 '0'

53) 2015년 말 영업 중인 지역·단체조합 중 총자산이 가장 작은 조합은 17억 원, 가장 큰 조합은 9,97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년도는 초임 또는 연임 임기의 다른 연도에 비해 다음 해에 치러지는 선거를 의식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사장은 초임기간(4년) 중 4년차는 임기의 다른 해에 비해 사적이익 측면에서 그 어느 해 보다 중요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사장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초임기간의 나머지연도(3년) 및 연임기간(4년) 간에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해에 해당하면 '1', 그 이외 임기에 해당하면 '0'의 더미변수를 (식 1)에 추가하였다.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Term_end_{i,t} + \beta_3 Term_end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1})$$

변수의 정의 : (식1) 참조

더미변수 $Term_end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이사장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 (y4)에 해당하면 '1', 초임(y1~y3) 및 연임(Y1~Y4)에 해당하면 '0'

또한, 연구가설 <가설 2>와 보조가설 <가설 2-a>와 같은 맥락에서 이사장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와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 간에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는 <가설 2-a>에서와 같이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이익조정의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는 재연임 제한으로 인해 이익조정 유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면 '1',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면 '0'의 더미변수를 (식 1)에 포함하였다.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FirstTerm_end_{i,t} + \beta_3 FirstTerm_end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2})$$

변수의 정의 : (식1) 참조

더미변수 $FirstTerm_end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 의 t 년도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y4)에 해당하면 '1',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Y4)에 해당하면 '0'

한편, 이사장 교체연도 즉, 신임이사장 부임 첫 해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다른 해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신임경영자는 취임 첫 해에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Wells, 2002; 이아영 등, 2009; 곽영민·최종서, 2011). 특히 이아영 등(2007)은 전임경영자가 기업 내에 잔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곽영민·최종서(2011)는 전임경영자가 강제로 사임하고 신임경영자가 회사내부에서 승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선거를 통해 4년마다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이사장 후보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이사장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장은 자발적 교체가 아닌 강제적 교체에 해당하고, 신임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 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에 따라 내부승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사장이 교체되더라도 전임이사장은 통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이사장은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교체연도 즉, 부임 첫 해에 재량적 항목을 이용하여 다른 해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교체연도 간의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사장 교체연도를 '1'로, 비교체연도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식 1)에 추가하였다.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Turnover_{i,t} + \beta_3 Turnover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 2-3)$$

변수의 정의 : (식1) 참조

더미변수 $Turnover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 의 t 년도 이사장이 교체된 경우(신임 이사장 부임 첫 해)이면 '1', 교체연도가 아니면 '0'

V. 실증분석

5.1 가설 1의 검증(이익유연화)

5.1.1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표 17>은 분석에 사용된 재량적항목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이하 대손상각비와 혼용한다)과 이익변수간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의 평균은 0.015로서 중위수 0.011 보다 높았다. 최소값은 0.000이고 최대값은 0.274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우편중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7>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변수 \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PROV_{i,t}$	7445	0.015	0.013	0.000	0.011	0.274
$AEARN_{i,t}$	7445	-0.007	0.025	-0.561	-0.003	0.262
$LOAN_{i,t}$	7445	0.577	0.144	0.005	0.602	0.888
$OL_{i,t}$	7445	0.286	0.304	0.000	0.095	0.885
$NPL.Rate_{i,t}$	7445	0.033	0.037	0.000	0.023	0.484
$B.ALL_{i,t}$	7445	0.015	0.014	0.000	0.011	0.300
$CO_{i,t}$	7445	0.010	0.021	0.000	0.001	0.434

(변수의 정의)

$PROV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비중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총자산)

$AEARN_{i,t}$: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비재량적초과이익 비중 (비재량적초과이익/총자산)

비재량적초과이익 = 비재량적이익 - 동일연도 단순산업평균 비재량적이익

비재량적이익 = 법인세공제전순이익+대손상각비

$LOAN_{i,t}$: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대출채권비중 (대출채권/총자산)

$OL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정상·요주의여신 비중 (정상·요주의여신/총자산)

$NPL.Rate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무수익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응)

$B.ALL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초대손충당금 비중 (기초대손충당금/총자산)

$CO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중 대손상각액 비중 (기중 대손상각액/총자산)

$\epsilon_{i,t}$: 오차항

관심변수인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의 평균값은 -0.007 이고 최대값은 0.262 이며 최소값은 -0.561 이다. 세부적으로 이익 평균을 보면 초과이익이 양(+)인 집단은 2,712개 표본에 0.006 이고, 초과이익이 음(-)인 집단은 4,733개 표본에 -0.015 를 보였다. 이는 초과이익이 양(+)인 신용협동조합 보다 음(-)인 신용협동조합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PROV_{i,t}$)은 총자산의 1.5% 이며, 표준편차는 1.3% 에 달하고 있고, 대손상각비의 상대적 크기가 대출채권의 2.6% ($PROV/LOAN$, $0.015/0.577$) 수준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통계치로부터 신용협동조합은 대손상각비를 재량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익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통제변수인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 ‘순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응)은 총자산의 3.3% , 대출채권의 5.7% ($0.033/0.577$)에 달하고 있어 부실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수익여신을 일시에 상각 처리할 경우 상당수의 신용협동조합은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대손충당금($B.ALL_{i,t}$)의 평균값은 총자산의 1.5% 를 점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채권 부실화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18>은 변수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과 대손상각비($PROV_{i,t}$)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072)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신용협동조합들이 이익수준을 고려하여 대손상각비를 재량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손상각비($PROV_{i,t}$)는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과 아주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0.75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수익여신이 미래 손실 가능성이 큰 대출채권으로 대손상각비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항목이

기 때문에 구조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손상각비($PROV_{i,t}$)와 대출채권($LOAN_{i,t}$)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114)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대손충당금($B.ALL_{i,t}$)과도 유의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0.765)를 보이고 있다. 기초대손충당금의 경우 기존에 적용한 대손충당금이 적을수록 기말 대손상각비를 많이 적립해야 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당수 조합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연도 말에 법규상 최소적립비율 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유지⁵⁴⁾하고자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과 기초대손충당금($B.ALL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161)를 보여 기초대손충당금이 증가하면 비재량적초과이익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과 기초대손충당금($B.ALL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561)를 보이고 있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하면 대손충당금이 증가될 수 있다.

<표 18> 상관관계 분석(N=7445)

변수/구분	$PROV_{i,t}$	$AEARN_{i,t}$	$LOAN_{i,t}$	$OL_{i,t}$	$NPL.Rate_{i,t}$	$B.ALL_{i,t}$	$CO_{i,t}$
$AEARN_{i,t}$	0.072*** (0.000)	1					
$LOAN_{i,t}$	0.114*** (0.000)	0.255*** (0.000)	1				
$OL_{i,t}$	0.160*** (0.000)	0.048*** (0.000)	0.232*** (0.000)	1			
$NPL.Rate_{i,t}$	0.757*** (0.000)	0.033*** (0.002)	-0.106*** (0.000)	0.012 (0.153)	1		
$B.ALL_{i,t}$	0.765*** (0.000)	-0.161*** (0.000)	0.078*** (0.000)	0.182*** (0.000)	0.561*** (0.000)	1	
$CO_{i,t}$	0.115*** (0.000)	-0.046*** (0.000)	0.046*** (0.000)	-0.261*** (0.000)	0.105*** (0.000)	0.227*** (0.000)	1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내는 유의확률

54) 2015년 조합 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역조합 276백만 원, 단체조합 134백만 원 수준이다. (직장조합 257백만 원)

5.1.2 <가설 1> 기본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하여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가설 1>의 기본모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비재량적초과이익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본 후 이러한 관련성이 <가설 2>에서와 같이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의 임기 형태에 따라 비재량적초과이익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1>의 기본모형 회귀분석의 주된 관심사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PROV_{i,t}$)이 비재량적 초과이익($AEARN_{i,t}$)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이익조정 전에 당해 연도의 성과인 비재량적초과이익을 토대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이 희망하는 보고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9>의 회귀분석모형의 기대부호는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설명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방향성과 연구가설을 전제로 추정하였다.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과 대손상각비와의 관계에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일 경우,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줄이려고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할 것이므로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출채권($LOAN_{i,t}$) 및 정상·요주의 여신($OL_{i,t}$)의 증가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도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면 대손충당금설정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양(+)의 관계를 보일 것이고, 여기에서는 무수익여신비율 대신에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대용변수로 이용하였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결정된 대손충당금요

적립액에서 기초대손충당금잔액과 기중대손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초대손충당금잔액($B.ALL_{i,t}$)의 경우 기초대손충당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말 대손상각비를 적게(많게) 적립하게 되어 직관적으로 음(-)의 관계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신용협동조합의 영세한 특성을 반영하여 양(+)의 부호를 예측했다. 즉, 신용협동조합은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기말에 법규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중상각액($CO_{i,t}$)의 경우 당해 연도 중 기중상각액이 발생하면 기말에 인식하는 대손충당금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양(+)의 관계를 예상했다.

<표 19>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1})$$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2	-7.137***	0.000
$AEARN_{i,t}$	+	0.058	18.847***	0.000
$LOAN_{i,t}$	+	0.009	15.423***	0.000
$OL_{i,t}$	+	0.001	3.433***	0.001
$NPL.Rate_{i,t}$	+	0.172	68.802***	0.000
$B.ALL_{i,t}$	+	0.473	69.412***	0.000
$CO_{i,t}$	+	-0.030	-7.709***	0.000
수정된 R ²	0.773 (F=4224.2)			
유효관측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표 19>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비재량적초과이익계수는 0.058(t값=18.84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많은 신

융협동조합들이 비재량적초과이익에 근거하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수준을 조정한다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타 통제변수로 사용된 항목들의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과의 관계에서, 기중대손상각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예상한 대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였다. 기중대손상각액($CO_{i,t}$)의 경우 예상과 달리 대손상각비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0.030 t 값= -7.709)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이 낮아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당기 제각을 불충분⁵⁵⁾하게 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충분한 기초대손충당금이 있다는 것이 기중대손상각 해당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 기말시점에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변수의 관계는 양(+)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의 경우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0.172 , t 값= 68.802)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미래손실 발생율이 높아 대손충당금설정액(고정 20% 이상, 회수의문 55% 이상, 추정손실 100%)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외 대출채권($LOAN_{i,t}$) 및 정상·요주의 여신($OL_{i,t}$)은 예상대로 1% 수준에서 각각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과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기초대손충당금($B.ALL_{i,t}$)의 경우는 대손상각비($PROV_{i,t}$)와 높은 유의한 양(+)의 관계(0.473 , t 값= 69.412)를 보이고 있는데⁵⁶⁾, 이는 기말시점에 가서 법규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요적립액에 대한 최저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는 유인이 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인 R^2 는 0.773 ($F=4224.2$)으로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55) 전체표본(7445개 실험-연도) 중 2,977개 표본(비중 40.0%)이 당해 연도 기중대손상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기초대손충당금($B.ALL_{i,t}$)과 대손상각비($PROV_{i,t}$)간의 상관관계는 1% 수준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0.765)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판단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796로 본 연구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유연화의 활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으로 나타난 집단과 음(-)으로 나타난 집단을 구분하여 (식 1)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즉,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이 이익성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달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20>은 비재량적초과이익에 따라 이익이 양호한 집단과 불량한 집단으로 구분한 회귀분석결과이다. <표 20>에서와 같이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 또는 음(-)인 집단에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의 회귀계수 값이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호한 경우 0.690, t값=80.360, 비재량적초과이익이 불량한 경우 0.012, t값=4.007)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 비재량적초과이익(±) 성과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식1)$$

변수 / 구 분	AEARN > 0 (N= 2,712)		AEARN < 0 (N= 4,733)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 수	-0.005	-11.662***	-0.003	-8.443***
$AEARN_{i,t}$	0.690	80.360***	0.012	4.007***
$LOAN_{i,t}$	0.005	8.826***	0.010	17.036***
$OL_{i,t}$	-0.001	-5.321***	0.000	1.061
$NPL.Rate_{i,t}$	0.105	36.431***	0.138	49.192***
$B.ALL_{i,t}$	0.743	76.868***	0.493	70.571***
$CO_{i,t}$	0.010	2.403**	-0.054	-13.203***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17> 참조

주2) ***는 1%,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두 집단 모두 대손상각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호한 집단에서 더 활발하게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머지 설명변수들도 <가설 1>의 기본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인 집단에서 대손상각비($PROV_{i,t}$)와 정상·요주의여신($OL_{i,t}$)은 유의한 음(-)의 회귀값(-0.001, t 값=-5.321)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용협동조합이 보수적인 여신취급을 통해 대손 발생 가능성을 낮게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2013년 6월까지의 법상 연임(총 8년=4년+4년)만 가능했고, 그 이후로 재연임(총 12년=4년+4년+4년)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사장이 연임한 경우 재연임이 허용되기 이전까지는 사적이익 측면에서 연임 재임기간 동안 다음 선거를 대비할 유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유효표본(7,445개 실험-연도)을 법상 재연임이 허용된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재연임이 허용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집단과 재연임이 허용된 이후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집단을 구분하여 (식 1)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표 21>에서와 같이, 이사장 임기의 재연임이 허용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3년 까지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의 회귀계수 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0.060, t 값=18.824)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연임이 허용된 2014년에서 2015년 기간 중에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상 이사장 임기가 재연임(최대 12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연임 기간 동안에는 다음 선거의 대비 등을 위한 별다른 이익조정 유인이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1> 이사장 (임기)재연임 허용 전후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1})$$

변수 / 구 분	2006~2013년 (N= 7,223)		2014~2015년 (N= 222)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 수	-0.002	-7.016***	-0.002	-2.393**
$AEARN_{i,t}$	0.060	18.824***	0.008	0.872
$LOAN_{i,t}$	0.008	14.862***	0.014	8.002***
$OL_{i,t}$	0.001	3.635***	0.143	10.749***
$NPL.Rate_{i,t}$	0.173	67.982***	0.282	6.834***
$B.ALL_{i,t}$	0.474	68.708***	0.003	0.284
$CO_{i,t}$	-0.031	7.926***	-0.054	-13.203***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17> 참조

주2) ***는 1%,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5.1.3 <가설 1-a>의 공동유대 형태별 회귀분석 결과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인 공동유대가 있다. 지역조합은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을 영업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다. 단체조합은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나 상인단체 등 조합의 구성원 간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형태에 따라 이익유연화 정도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1-1)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유대의 더미변수로 지역조합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회귀식에 추가하였다.

<표 22>에서와 같이 더미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지역조합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

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0.012, t값=3.388) 값을 나타내고 있다. 관심변수인 β_3 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1% 수준에서 매우 높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0.182, t값=28.711)를 보이고 있어 지역조합에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이 단체조합에 비해 이익조정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한 보조가설 <1-a>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간 동질성이 단체조합 보다 떨어짐에 따라 경영진은 이익조정을 통해 조합원 신뢰, 대외신인도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공동유대 형태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Type_{i,t} + \beta_3 Type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1-1})$$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2	-4.860***	0.000
$AEARN_{i,t}$	+	0.012	3.388***	0.001
$Type_{i,t}$		0.001	2.867***	0.004
$Type_{i,t} * AEARN_{i,t}$	+	0.182	28.711***	0.000
$LOAN_{i,t}$	+	0.006	11.889***	0.000
$OL_{i,t}$	+	0.001	2.393**	0.017
$NPL.Rate_{i,t}$	+	0.155	63.016***	0.000
$B.ALL_{i,t}$	+	0.535	78.785***	0.000
$CO_{i,t}$	+	-0.027	-7.555***	0.000
수정된 R ²	0.797 (F=3647.6)			
유효관측 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더미변수 $Type_{i,t}$ 는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지역조합이면 '1', 아니면 '0'

주2) ***는 1%,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그 외 설명변수인 대출채권($LOAN_{i,t}$), 정상·요주의여신($OL_{i,t}$), 무수익 여신비율($NPL.Rate_{i,t}$), 기초대손충당금($B.ALL_{i,t}$) 등의 변수들은 <가설 1>의 기본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유의한 회귀계수와 부호 형태를 띠고 있다.

5.1.4 <가설 1-b>의 자산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대출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더 활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산 크기에 따른 이익유연화 현상의 차이가 있는지 총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과 300억 원 미만 조합으로 구분하여 (식 1-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산규모의 더미변수로 연도 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회귀식에 추가하였다.⁵⁷⁾ 신용협동조합은 직전 연도말 자산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23>에서와 같이 더미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값(0.024, t 값=8.770)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인 β_3 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1% 수준에서 매우 높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0.482, t 값=62.385)를 보이고 있어 자산규모가 큰 조합에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익조정을 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이익조정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 보조가설 <1-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소규모 신용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대출취급 규모가 작고 수익의 변동

57) 2015년 말 기준 분석대상 조합(760개) 중 자산규모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616개(지역조합 571개, 단체조합 45개)이다.

폭도 적어 이익조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대형 신용협동조합은 건당 규모가 큰 대출취급⁵⁸⁾이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 기법이 소형 조합에 비해 많이 있음을 암시한다.

<표 23> 자산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Size_{i,t} + \beta_3 Size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1-2})$$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1	-5.041***	0.000
$AEARN_{i,t}$	+	0.024	8.770***	0.000
$Size_{i,t}$		-0.001	-7.980***	0.000
$Size_{i,t} * AEARN_{i,t}$	+	0.482	62.385***	0.000
$LOAN_{i,t}$	+	0.007	15.868***	0.000
$OL_{i,t}$	+	-0.001	-4.756***	0.000
$NPL.Rate_{i,t}$	+	0.131	61.880***	0.000
$B.ALL_{i,t}$	+	0.597	101.807***	0.000
$CO_{i,t}$	+	-0.012	-3.959***	0.000
수정된 R ²	0.856 (F=5516.9)			
유효관측 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더미변수 $Size_{i,t}$ 는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이면 '1', 아니면 '0'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그 외 변수들인 대출채권($LOAN_{i,t}$),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 기초

58) 법상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동일인대출한도는 MAX[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이 250억 원 미만인 경우 30억 원, 250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의 최고한도는 5억 원이다.

대손충당금($B.ALL_{i,t}$) 등은 <가설 1>의 기본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유의한 회귀계수와 부호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정상·요주의여신($OL_{i,t}$)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기대부호와 달리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0.001 , $t_{값}=-4.756$)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여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여신을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송현(2016)은 감사인이 지정된 저축은행과 지정되지 않은 저축은행 간의 대손충당금 초과적립에 의한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감사인이 지정된 저축은행에서 이익조정이 적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자산규모가 커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면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신용협동조합은 외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있는 반면, 부실한 저축은행이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 등의 경우 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함에 따라 자산규모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가설 2의 검증(최고경영자 교체)

5.2.1 <가설 2>의 이사장 임기 초임 및 연임 회귀분석 결과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일반기업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연임(4년+4년)만 가능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재연임(4년+4년+4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사장은 4년 마다 치러지는 선거에 대비하여 자신의 경영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로서 보고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사장이 재선(再選)이라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동안 재량적 항목인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가지고 이익조정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임기 4년을 기준으로 초임(4년)과 연임(4년)으로 구분하여 이익유연화 정도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2)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사장 임기 초임(4년)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의 연임을 목적으로 한 이익조정 유인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더미변수로 이사장 초임(초임기간 중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4년 재임기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더미변수를 회귀식에 추가하였다.

<표 24>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값(0.020, t 값=3.844)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인 β_3 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0.060, t 값=9.664)를 보이고 있어 이사장 임기 초임 4년 동안이 이사장 임기 연임 4년 동안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더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사장 초임의 경우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경영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보고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재량적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사장 임기 연임기간(4년)의 경우 2013.6월 이전까지는 재연임⁵⁹⁾이 허용되지 않아 이익조정의 동기가 초임기간(4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통제변수로 사용된 항목의 경우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여타 설명변수 간에는 <가설 1> 등 앞에서 분석한 회귀계수 및 기대부호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가설1>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59) 2013년 6월부터는 재연임이 가능하여 총 12년(초임, 연임, 재연임) 임기가 가능하다. 유효표본 중 2013년 6월 이후 이사장이 재연임된 표본은 222개 실험-연도이다.

<표 24>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 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PROV_{i,t} =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First_Term_{i,t} + \beta_3 First_Term_{i,t} * AEARN_{i,t} \\
 &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
 \end{aligned}$$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3	-8.224***	0.000
$AEARN_{i,t}$	+	0.020	3.844***	0.000
$First_Term_{i,t}$		0.001	5.185***	0.000
$First_Term_{i,t} * AEARN_{i,t}$	+	0.060	9.664***	0.000
$LOAN_{i,t}$	+	0.008	14.942***	0.000
$OL_{i,t}$	+	0.001	2.135**	0.033
$NPL.Rate_{i,t}$	+	0.172	67.825***	0.000
$B.ALL_{i,t}$	+	0.479	69.455***	0.000
$CO_{i,t}$	+	-0.031	-8.009***	0.000
수정된 R ²	0.777 (F=3143.8)			
유효관측 수	7,223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17> 참조

더미변수 $First_Term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y1 ~ y4)에 해당하면 '1', 연임기간 4년(Y1~Y4)에 해당하면 '0'

주2) ***는 1%,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한편, 전체표본을 가지고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 집단과 연임기간(4년) 집단으로 구분하여 (식 1)를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 24-1>에서와 같이 이사장 초임기간 및 연임기간 모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초임기간 4년 0.080, t값=19.226 / 연임기간 4년 0.015, t값=3.999)를 보이고 있다. 두 집단 모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사장 초임기간 4년 동안이 연임기간 4년 동안에 비해 기

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설명변수들은 두 집단 모두 앞의 <가설 2>와 비슷한 회귀계수와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다만, 정상 및 요주의여신($OL_{i,t}$)의 경우 초임기간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미약하나마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연임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중상각액($CO_{i,t}$)은 초임기간 4년과 달리 연임기간 4년 중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임기간 4년 중 정상·요주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기중대손상각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24-1>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1})$$

변수 / 구 분	초임 4년(N= 5,189)		연임 4년(N= 2,034)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 수	-0.002	-5.487***	-0.002	-4.915***
$AEARN_{i,t}$	0.080	19.226***	0.015	3.999***
$LOAN_{i,t}$	0.008	11.184***	0.010	14.230***
$OL_{i,t}$	0.001	1.828*	0.000	1.148
$NPL.Rate_{i,t}$	0.185	58.674***	0.137	39.792***
$B.ALL_{i,t}$	0.489	59.290***	0.385	33.856***
$CO_{i,t}$	-0.043	-8.028***	-0.005	-1.12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주2) ***는 1%,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5.2.2 이사장 임기 마지막 연도 회귀분석 결과

통상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를 이사장 임기 마지막 년도의 다음 해 2월~3월 개최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등은 4년마다 이루어지며, 조합별로 총회 개최 시기가 각각 다르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지역 및 단체조합은 총 760개이며, 이중 54.1%가 2014년 초에 총회 개최시기가 도래하였다. 다음으로 조합의 총회 개최시기 도래 비중은 2016년 초 31.7%, 2015년 초 11.8%, 2013년 초 2.4%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사장 임기 4년 중 마지막 해, 즉 임기 4년차는 각 총회 개최시기 도래 직전연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14년 초 총회를 개최한 조합의 경우 2013년도가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가 된다. 조합별 이사장 임기 마지막 도래 현황은 <표 25>와 같으며, 2013년도와 2015년도가 지역·단체조합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이사장 임기 마지막 연도 도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조합수 (비중)	241 (31.7)	90 (11.8)	411 (54.1)	18 (2.4)	760 (100)
지역	214	76	363	11	664
단체	27	14	48	7	96
직전 임기 마지막 도래 연도	2011년 2007년	2010년 2006년	2009년	2008년	

주1) 조합 선거는 이사장 임기 마지막 년도의 익년 초 실시

주2) 이사장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미고려

본 연구의 표본 선정기간인 2006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유효표본은 7,445개 신협-연도이며, 이중 이사장이 재연임된 표본은 222개 신협-연도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 도래 조합은 1,423개 신협-연도⁶⁰⁾이며, 공동유대 형태별로는 지역조합이 1,186개 신

협-연도, 단체조합이 237개 신탁-연도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라 이익유연화 정도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2-1)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사장 초임(초임기간 중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4년 재임기간 중 4년차를 이사장 임기 마지막 연도로 보고, 이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더미변수를 회귀식에 추가하였다.

<표 26>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 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PROV_{i,t} =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Term_end_{i,t} + \beta_3 Term_end_{i,t} * AEARN_{i,t} \\
 &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식 2-1)
 \end{aligned}$$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2	-6.688***	0.000
$AEARN_{i,t}$	+	0.055	16.581***	0.000
$Term_end_{i,t}$		0.000	0.770	0.441
$Term_end_{i,t} * AEARN_{i,t}$	+	0.045	5.011***	0.000
$LOAN_{i,t}$	+	0.008	14.429***	0.000
$OL_{i,t}$	+	0.001	3.580***	0.000
$NPL.Rate_{i,t}$	+	0.172	67.599***	0.000
$B.ALL_{i,t}$	+	0.479	68.902***	0.000
$CO_{i,t}$	+	-0.031	-7.878***	0.000
수정된 R ²	0.775 (F=3102.4)			
유효관측 수	7,223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더미변수 $Term_end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이사장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y4)에 해당하면 '1', 초임(y1~y3) 및 연임(Y1~Y4)에 해당하면 '0'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 60) 이사장 임기 4년차 도래 조합은 총 1,810개 신탁-연도이며, 이 중 연임 4년차(385개 신탁-연도) 및 재연임 4년차(2개 신탁-연도, 보궐선거 영향)를 제외하여 총 1,423개 신탁-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사장이 임기 4년차에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표 26>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0.055, t 값=16.581)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인 β_3 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0.045, t 값=5.011)를 보이고 있어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는 임기 다른 해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더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사장이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경영지표 관리, 조합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초임임기 4년 중 마지막 연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 유인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외 설명변수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 간의 관계는 <가설 1> 등 앞에서 분석한 회귀계수 및 기대부호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표본을 이사장 임기 초임 중 마지막 연도 집단과 임기의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식 1)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6-1>에서와 같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간의 관계를 보면, 두 집단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어 대손상각을 이용한 이익조정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 집단의 회귀계수(0.108, t 값=11.014)가 이사장 임기 나머지 연도⁶¹⁾ 집단의 회귀계수(0.054, t 값=16.121) 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해에 비재량적초과이익에 근거하여 대손상각비 수준을 조정한다는 <가설 2-a>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기타 설명변수로 사용된 항목의 경우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가설 1> 등에서와 같은 부호와 회귀계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해의 정상·요주의여신($OL_{i,t}$)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 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1)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3개 연도(y1~y3) 및 연임기간 4개 연도(Y1~Y4)

<표 26-1>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와
그 이외 임기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1})$$

변수 / 구 분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 (N= 1,423)		그외 나머지 연도 (N= 5,800)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 수	-0.001	-1.760*	-0.002	-6.498***
$AEARN_{i,t}$	0.108	11.014***	0.054	16.121***
$LOAN_{i,t}$	0.007	5.653***	0.008	13.323***
$OL_{i,t}$	0.001	0.844	0.001	3.592***
$NPL.Rate_{i,t}$	0.160	28.328***	0.175	61.460***
$B.ALL_{i,t}$	0.501	33.754***	0.472	59.775***
$CO_{i,t}$	-0.029	-3.193***	-0.032	-7.254***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주2) ***는 1%,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5.2.3 <가설 2-b>의 임기 초임 및 연임의 마지막연도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조정을 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연도와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연도 간에 이익조정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본가설 <가설 2>에서와 같이 이사장은 초임기간(4년)이 연임기간(4년)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장이 초임기간 동안 다음 선거를 대비하려는 사적이익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해

의 경우 다음 선거를 대비할 실익이 별로 없어 이익조정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1차 연임(4년+4년)만 가능했고, 그 이후에야 재연임이 허용(4년+4년+4년)되었기 때문이다.⁶²⁾

연구표본(7,223개 신탁-연도) 중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4년차에 해당하는 표본은 1,423개 신탁-연도이고, 이사장 연임기간 중 4년차에 해당하는 표본은 385개 신탁-연도이다. 두 표본의 이익조정 현상이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2-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표본 중 이사장 초임기간 중 마지막연도에 해당하면 '1'을, 연임기간 중 마지막연도에 해당하면 '0'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표 27>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0.044, t 값=3.918)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인 β_3 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비재량적초과이익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0.056, t 값=3.932)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가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활발할 것이라는 <가설 2-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설 2-a>의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년도는 임기의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크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⁶³⁾

이러한 결과는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우 다음 선거를 대비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있지만,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우 더 이상 재연임이 어려워 사적이익 측면에서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이

62) 전체표본(7,445개 신탁-연도) 중에서 2013년 6월 이후 이사장이 재연임한 표본은 222개 신탁-연도이다.

63) 이사장 임기 초임의 마지막 연도와 연임의 마지막 연도를 분석함에 있어, 동 표본에는 2013년 6월 이후 이사장이 재연임된 조합(222개 신탁-연도)이 제외되어 있다. 2013년 6월 이후 이사장 재연임이 허용됨에 따라 연임기간 중 4년차도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이익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임과 연임 기간 중 각 4년차와 재연임 기간 중 4년차의 이익조정 현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연임 기간 중 4년차 자료가 2개 신탁-연도(보궐선거 영향) 밖에 없어(적어도 2017년부터 재연임 기간 중 4년차 도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익조정을 할 유인이 줄어들었음을 암시한다.

기타 통제변수로 사용된 항목의 경우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 ($PROV_{i,t}$)과 여타 설명변수 간에는 <가설 1>과 같은 부호와 회귀계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설 1>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표 27>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의 마지막연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FirstTerm_end_{i,t} + \beta_3 FirstTerm_end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 2-2)$$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2	-2.253**	0.024
$AEARN_{i,t}$	+	0.044	3.918***	0.000
$FirstTerm_end_{i,t}$		0.000	-0.231	0.817
$FirstTerm_end_{i,t} * AEARN_{i,t}$	+	0.056	3.932***	0.000
$LOAN_{i,t}$	+	0.008	6.875***	0.000
$OL_{i,t}$	+	0.001	1.652*	0.099
$NPL.Rate_{i,t}$	+	0.168	33.319***	0.000
$B.ALL_{i,t}$	+	0.467	33.864***	0.000
$CO_{i,t}$	+	-0.017	-2.296**	0.022
수정된 R ²	0.772 (F=764.2)			
유효관측 수	1,808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더미변수 $FirstTerm_end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 연도(y4)에 해당하면 '1',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Y4)에 해당하면 '0'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한편, 당해표본(1,808개 신탁-연도)을 가지고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4년 중 마지막연도와 연임기간 4년 중 마지막연도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식 1)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 27-1>에서와 같이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과 연임기간의 각 마지막연도 집단의 경우 모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간에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연도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값(0.108, t 값=11.014)을 보인 반면, 연임기간 중 마지막연도의 경우 5% 수준에 유의한 회귀값(0.021, t 값=2.022)을 보여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가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에 비해 회귀계수 값이 더 크고 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가설 <2-b>에서 제시한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가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7-1> 이사장 (임기)초임 및 연임기간의 마지막연도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1})$$

변수 / 구 분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 (N= 1,423)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 (N= 385)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 수	-0.001	-1.760*	-0.003	-2.117**
$AEARN_{i,t}$	0.108	11.014***	0.021	2.022**
$LOAN_{i,t}$	0.007	5.653***	0.014	5.819***
$OL_{i,t}$	0.001	0.844	0.000	0.076
$NPL.Rate_{i,t}$	0.160	28.328***	0.222	20.626***
$B.ALL_{i,t}$	0.501	33.754***	0.092	2.030**
$CO_{i,t}$	-0.29	-3.193***	0.013	1.12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5.2.4 <가설2-c>의 이사장 교체연도 회귀분석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신임경영자는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규언, 1992; 이아영, 2007; Moore, 1973; Strong and Meyer, 1987; DeAngelo, 1988; Pourciau, 1993; Francis et al., 1996). 이에 반해 전임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신임경영자가 외부에서 영입되는 경우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양(+)의 이익조정 증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곽영민·최종서 2011), 또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당해 연도에 발생액과 연구비 지출 등이 줄어드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저조한 경영성과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Murphy and Zimmerman, 1993).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적 기업환경에서 신임경영자의 big bath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심동석·안창호, 2015).

여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교체된 경우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이사장이 임기 첫해(=교체연도)에 비재량적초과이익에 근거하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통해 이익수준을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신임이사장 임기 첫해의 이익조정이 임기의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표본(7,223개 신흥-연도) 중 이사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이사장 임기의 첫해를 교체연도로 보고, 동 교체연도와 나머지 연도의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2-3)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사장이 교체된 조합의 경우 교체연도 즉, 신임이사장의 임기 첫해에 해당하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표 28>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0.061, t 값=17.463)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심변수인 β_3 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비재량적초과이익 간에는 음

(-)의 회귀계수(-0.006, t값=-0.817)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를 통해 이사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 이사장의 임기 첫해가 임기의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이 클 것이라는 <가설 2-c>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표 28> 이사장 교체연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Turnover_{i,t} + \beta_3 Turnover_{i,t} * AEARN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3})$$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3	-7.231***	0.000
$AEARN_{i,t}$	+	0.061	17.463***	0.000
$Turnover_{i,t}$		0.000	2.067**	0.039
$Turnover_{i,t} * AEARN_{i,t}$	+	-0.006	-0.817	0.414
$LOAN_{i,t}$	+	0.009	14.977***	0.000
$OL_{i,t}$	+	0.001	3.378***	0.001
$NPL.Rate_{i,t}$	+	0.173	67.929***	0.000
$B.ALL_{i,t}$	+	0.474	68.580***	0.000
$CO_{i,t}$	+	-0.031	-7.780***	0.000
수정된 R ²	0.774 (F=3091.8)			
유효관측 수	7,223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더미변수 $Turnover_{i,t}$ 는 신용협동조합의 i의 t년도 이사장이 교체된 연도(신임 이사장 임기 첫해)이면 '1', 교체연도가 아니면 '0'

주2) ***는 1%,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곽영민 등(2011)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표본 317개 기업-년도와 이에 대응되는 634개의 비교체 통제표본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 전임경영자가 비자발적으로 사임하고 내부출신의 신임경영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경영자가 교체되기 직전년도에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반면 신임경영자는 교체연도의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매 4년마다 조합원 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출하는데, 통상 이사는 지역조합의 경우 그 지역의 토호세력, 단체조합의 경우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가 선거를 통해 교체되는 경우 그 이사는 자발적 사임이 아닌 강제적 사임에 해당하고, 신임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됨에 따라 내부승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임이사는 선거에 의해 교체되더라도 퇴임 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선거를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임이사는 교체연도에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을 크게 달리할 기회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표본을 가지고 이사가 교체된 조합의 신임이사 임기 첫 해⁶⁴⁾와 교체되지 아니한 조합의 이사 임기 나머지 연도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식 1)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 28-1>에서와 같이 이사 교체연도와 비교연도 모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교체연도 0.058, $t_{값}=8.038$ / 비교연도 0.059, $t_{값}=16.852$)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비재량적초과이익에 근거하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집단의 비재량적초과이익 회귀계수가 각각 0.058, 0.059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교체연도의 이익조정이 비교연도의 이익조정 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가로 두 집단 간의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 두 집단의 비재량적초과이익에 대해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비재량적초과이익의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64)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사의 임기 첫 해와 보궐선거 등을 통해 이사가 중도에 교체된 경우 그 교체된 첫 해를 포함하였다.

65) 이사 교체연도와 비교연도간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 비재량적초과이익의 평균 차이 검증(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 t-value가 -1.601이고 유의확률(양쪽)은 0.109로 나타나 $H_0: \mu_1 = \mu_2$ 는 $\alpha=0.05$ 에서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표 28-1>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非)교체연도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AEARN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 (\text{식1})$$

변수 / 구 분	교체연도(N= 1,295)		비교체연도(N= 5,928)	
	계수	t 값	계수	t 값
상 수	-0.002	-2.650***	-0.002	-6.601***
$AEARN_{i,t}$	0.058	8.038***	0.059	16.852***
$LOAN_{i,t}$	0.009	6.456***	0.008	13.615***
$OL_{i,t}$	0.000	0.156	0.001	3.484***
$NPL.Rate_{i,t}$	0.155	27.538***	0.177	62.367***
$B.ALL_{i,t}$	0.541	35.974***	0.456	58.774***
$CO_{i,t}$	-0.085	-7.275***	-0.023	-5.452***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1), <표 17> 참조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났다.

5.3 실증분석 결과 요약

<표 29> 가설검증결과 요약표

1. 이익유연화

가설	관심 계수	변수	예상 부호	가설 내용	분석결과 (유의수준)	연구결론
1 (기본모형)	β_1	비재량적 초과이익	+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 ***	지지
1-a (공동유대별)	β_1 β_3		+	이익조정 크기 : 지역조합 > 단체조합	+ ***	지지
1-b (자산규모별)	β_1 β_3		+	이익조정 크기 : 총자산 300억 원 이상 > 총자산 300억 원 미만	+ ***	지지

주)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2. 최고경영자 교체

가설	관심 계수	변수	예상 부호	가설 내용	분석결과 (유의수준)	연구결론
2 (기본모형)	β_1 β_3	비재량적 초과이익	+	이익조정 크기 : 임기 초임기간(4년) > 임기 연임기간(4년)	+ ***	지지
2-a (초임 4년차/ 그외 연도)	β_1 β_3		+	이익조정 크기 : 임기 초임 마지막연도 > 임기 다른 연도	+ ***	지지
2-b (초임/연임 마지막연도)	β_1 β_3		+	이익조정 크기 : 임기 초임 마지막연도 > 임기 연임 마지막연도	+ ***	지지
2-c (이사장 교체 /비교체 연도)	β_1 β_3		+	이익조정 크기 : 이사장 교체연도(취임 첫 해) > 비교체연도	- (비유의)	기각

주)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5.4 추가분석

본 추가분석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가 재량성이 높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가지고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살펴보았다. 본 추가분석은 <가설 1>에서 분석했던 표본 7,445개 신탁-연도를 이용하였다.

5.4.1 자본관리

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여, 또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및 고객들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적정성은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행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회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여부 및 보유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⁶⁶⁾을 적용하여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은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순자본비율은 감독당국 및 신탁중앙회에서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서 순자본비율 2% 미만은 재무상태 개선권고, 마이너스 3% 미만은 재무상태 개선요구, 마이너스 15% 미만은 경영관리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순

66)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1988년 7월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내은행은 2013년 말부터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 - \text{공제항목}}{\sum(\text{재무상태표} \times \text{위험가중치}) + \sum(\text{부외항목} \times \text{신용환산율} \times \text{위험가중치})} \times 100 \end{aligned}$$

자본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순자본비율} = \frac{(\text{총자산} - \text{총부채} - \text{출자금} + \text{후순위차입금} + \text{대손충당금})}{\text{총자산} + \text{대손충당금}}$$

위 식에서 대손충당금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한 대출채권에 대해 적립한 충당금과 ‘고정’으로 분류한 대출채권에 대해 적립한 충당금 중 일부(총자산의 1.25% 이내)만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정’으로 분류한 대출채권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고정’으로 분류한 채권을 많이 보유한 조합이 적은 조합보다 순자본비율이 높아져 순자본비율의 변별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상·요주의’ 분류 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증가시켜 분자항목이 증가하더라도 당기순이익 또한 감소하므로 순자본비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정’으로 분류한 채권이 많을 경우 동 분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이러한 효과를 상쇄하고 순자본비율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을 환급해주고 있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⁶⁷⁾, 후순위차입금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건이 강화되면서⁶⁸⁾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완자본⁶⁹⁾의 일종이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향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 높은 신임도 유지 등의 측면에서 재량적인 조정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 67)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이전에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 출자금을 전액 환급해 줄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 개정(2015.7.21. 시행) 이후에는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해 출자금을 환급해 줄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의 경영실적(순자본= 자산-부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8) 경영관리 요건은 순자본비율 -20%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재무상태 개선권고 요건은 순자본비율 0% 미만에서 2% 미만으로 각각 강화한 바 있다.
- 69) 후순위차입금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으로 차입기간 5년 이상, 만기 전 채권자 임의에 의한 상환 불가 등 세부내용을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회계처리 특성상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자동 처리되고 있어 경영자가 임의적인 조정을 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의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함에 있어 순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적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자는 순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이익잉여금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1>의 (식 1)에서 사용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였다. 즉, (식 1)의 기본모형에다 자본관리의 대리변수로 순자본비율($CAP.Ratio_{i,t}$) 변수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자기자본비율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종속변수로 하고 순자본비율, 대출채권, 정상·요주의여신, 무수익여신비율, 기초대손충당금, 기중대손상각액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식 1)에서 설명변수로 활용했던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_{i,t}$)의 경우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회귀식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무수여신비율(‘순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응)과 순자본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

$$PROV_{i,t} = \beta_0 + \beta_1 CAP.Ratio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dots\dots (식3)$$

변수의 정의 :

$PROV_{i,t}$: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비중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총자산)

$CAP.Ratio_{i,t}$: 신용협동조합 i 의 t 년도 순자본비율

$LOAN_{i,t}$: 신용협동조합의 i 의 t 년도 대출채권비중 (대출채권/총자산)

$OL_{i,t}$: 신용협동조합 i 의 t 년도 정상·요주의여신 비중 (정상·요주의여신/총자산)

$NPL.Rate_{i,t}$: 신용협동조합 i 의 t 년도 무수익여신비율('순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체)

$B.ALL_{i,t}$: 신용협동조합 i 의 t 년도 기초대손충당금 비중 (기초대손충당금/총자산)

$CO_{i,t}$: 신용협동조합 i 의 t 년도 기중대손상각액 비중 (기중대손상각액/총자산)

$\epsilon_{i,t}$: 오차항

위 식에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과 설명변수들 간의 기대부호를 살펴보면, 기초대손충당금의 경우 신탁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경영자가 연도 말에 법규상 최소적립비율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때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기중대손상각액과 정상·요주의여신 및 무수익여신도 각각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자본관리가설의 검증변수인 순자본비율($CAP.Ratio$)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지가 관심인데, 이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순자본비율 산정시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5.4.2 표본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손충당금설정액은 성격상 자본적정성 여부를 대표하는 자본비율을 조정하는 자본관리에도 활용됨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분석에서는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자본관리에도 활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식 3)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0>에서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의 비재량적 요소를 설명변수로 통제한 다음, 검증변수인 순자본비율($CAP.Ratio_{i,t}$)의 회귀계수 간 유의성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기대부호는 <가설 1>의 기본모형과

같이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설명변수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실무회계처리 경험을 고려하여 예측하였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순자본비율($CAP.Ratio_{i,t}$)의 관계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이익잉여금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나타나므로 음(-)의 관계가 정상적일 것이다. 그 외 변수들은 <가설 1> 기본모형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회귀분석 결과, <표 30>에서와 같이 자본적정성을 대표하는 순자본비율($CAP.Ratio_{i,t}$)과 재량적 활용이 높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는 기대부호와 달리 양(+)의 회귀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에서와 같이 전체표본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적 활용이 높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의 경우 이익조정에는 활용되고 있으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는 자본관리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0>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CAP.Ratio_{i,t} + \beta_2 LOAN_{i,t} + \beta_3 OL_{i,t} + \beta_4 NPL.Rate_{i,t} + \beta_5 B.ALL_{i,t} + \beta_6 CO_{i,t} + \epsilon_{i,t}$$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5	-13.560***	0.000
$CAP.Ratio_{i,t}$	-	0.002	0.997	0.319
$LOAN_{i,t}$	+	0.012	21.413***	0.000
$OL_{i,t}$	+	0.001	4.105***	0.000
$NPL.Rate_{i,t}$	+	0.182	72.842***	0.000
$B.ALL_{i,t}$	+	0.439	65.270***	0.000
$CO_{i,t}$	+	-0.029	-7.402***	0.000
수정된 R ²	0.762 (F=3975.8)			
유효관측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3) 참조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그 외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출채권($LOAN_{i,t}$), 정상·요주의여신($OL_{i,t}$), 무수익여신비율($NPL.Rate_{i,t}$)의 증가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이어져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초대손충당금($B.ALL_{i,t}$)의 경우에도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초대손충당금이 최소한으로만 적립되어 있을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은 법규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100%) 이상 충당금을 설정하려는 행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기중상각액($CO_{i,t}$)의 경우 기중상각액이 많을수록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기대부호(+)와 달리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가 이익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인식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기중상각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4.3 순자본비율 수준별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순자본비율 수준별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자본관리의 대리변수인 순자본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순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자본관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3)에 더미변수로 순자본비율 수준을 포함하였다. 즉, 각 연도말 순자본비율이 2% 미만이면 '1'을, 2% 이상이면 '0'으로 하여 순자본비율이 낮은 집단에서 자본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표 3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순자본비율($CAP.Ratio_{i,t}$)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미변수를 포함한 순자본비율 2% 미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0.029 , $t_{값} = -3.6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면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대손충당금설정전

순자본비율이 낮은 경우에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⁷⁰⁾

<표 31> 순자본비율 수준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CAP_Ratio_{i,t} + \beta_2 CAP_level_{i,t} + \beta_3 CAP_level_{i,t} * CAP_Ratio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_Rate_{i,t} + \beta_7 B_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5	-12.243***	0.000
$CAP_Ratio_{i,t}$	-	0.006	1.531	0.126
$CAP_level_{i,t}$		0.000	-0.864	0.387
$CAP_level_{i,t} * CAP_Ratio_{i,t}$	-	-0.029	-3.650***	0.000
$LOAN_{i,t}$	+	0.012	21.203***	0.000
$OL_{i,t}$	+	0.001	4.202***	0.000
$NPL_Rate_{i,t}$	+	0.182	72.912***	0.000
$B_ALL_{i,t}$	+	0.434	63.324***	0.000
$CO_{i,t}$	+	-0.029	-7.217***	0.000
수정된 R ²	0.763 (F=2989.4)			
유효관측 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3) 참조

더미변수 $CAP_level_{i,t}$ 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순자본비율이 2% 미만이면 '1', 아니면 '0'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순자본비율은 분자항목으로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과 대손충당금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분모항목으로 총자산과 대손충당금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자 및 분모항목에 반영하는 대손충당금의 경우 정상 및 요주의분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고정분류여신의 대손충당금 중 총자산의 1.25%만 인정하

70) 순자본비율 2% 미만인 조합의 경우 고정분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최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 있다. 따라서 정상 및 요주의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증가시켜 분자항목이 증가하더라도 당기순이익 또한 감소하므로 순자본비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정분류채권은 회수예상가액의 2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총자산의 1.25% 이내에서만 인정⁷¹⁾되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만큼 감소하므로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다.

5.4.4 공동유대 형태별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형태별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자본관리의 대리변수인 순자본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유대 형태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자본관리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3)의 기본모형에 더미변수로 공동유대를 포함하였다. 즉, 각 연도 말 지역조합에 해당하면 '1'을, 아니면 '0'으로 하여 공동유대 집단 간에 자본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검증변수인 순자본비율($CAP.Ratio_{i,t}$)과는 기대부호와 같이 음(-)의 회귀값을 보이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미변수를 포함한 지역조합의 경우 기대부호와 달리 양(+)의 회귀 값을 보이고 유의하지도 않다.

5.4.5 자산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 크기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자본관리의 대리변수인 순자본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설명

71) 고정분류 해당분의 대손충당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고정분류 채권이 많은 조합이 적은 조합보다 순자본비율이 높아져 순자본비율의 변별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말부터 총자산의 1.25%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순자본비율 산식에서 분자항목으로 정상·요주의 분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잔액 전액과 고정으로 분류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잔액의 일부(총자산의 1.25%)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정이하 분류채권이 많은 조합의 경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자기자본 감소로 이어져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총자산 크기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자본관리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 3)의 기본모형에 더미변수로 총자산규모를 포함하였다. 즉, 각 연도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1'을, 아니면 '0'으로 하여 총자산 크기에 따라 자본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32> 공동유대 형태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CAP.Ratio_{i,t} + \beta_2 Type_{i,t} + \beta_3 Type_{i,t} * CAP.Ratio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4	-9.979***	0.000
$CAP.Ratio_{i,t}$	-	-0.005	-0.986	0.324
$Type_{i,t}$		-0.001	-2.711***	0.007
$Type_{i,t} * CAP.Ratio_{i,t}$	-	0.008	1.464	0.143
$LOAN_{i,t}$	+	0.012	21.152***	0.000
$OL_{i,t}$	+	0.001	4.039***	0.000
$NPL.Rate_{i,t}$	+	0.183	72.815***	0.000
$B.ALL_{i,t}$	+	0.438	65.146***	0.000
$CO_{i,t}$	+	-0.029	-7.336***	0.000
수정된 R ²	0.76 (F=2985.1)			
유효관측 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3) 참조

더미변수 $Type_{i,t}$ 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지역조합이면 '1', 아니면 '0'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표 3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_{i,t}$)과 검증변수인 순자본비율($CAP.Ratio_{i,t}$)과는 기대부호와 같이 미약하나마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값(-0.006, t 값=-1.811)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미변수를 포함한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기대부호와 달리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값(0.020, t 값=4.184)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고정 분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경우 총자산의 1.25% 범위내에서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총자산이 클수록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 분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늘어나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 총자산 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PROV_{i,t} = \beta_0 + \beta_1 CAP.Ratio_{i,t} + \beta_2 Size_{i,t} + \beta_3 Size_{i,t} * CAP.Ratio_{i,t} + \beta_4 LOAN_{i,t} + \beta_5 OL_{i,t} + \beta_6 NPL.Rate_{i,t} + \beta_7 B.ALL_{i,t} + \beta_8 CO_{i,t} + \epsilon_{i,t}$$

변수 / 구 분	기대부호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04	-12.306***	0.000
$CAP.Ratio_{i,t}$	-	-0.006	-1.811*	0.070
$Size_{i,t}$		-0.002	-9.539***	0.000
$Size_{i,t} * CAP.Ratio_{i,t}$	-	0.020	4.184***	0.000
$LOAN_{i,t}$	+	0.013	23.052***	0.000
$OL_{i,t}$	+	0.001	2.156**	0.031
$NPL.Rate_{i,t}$	+	0.186	73.812***	0.000
$B.ALL_{i,t}$	+	0.428	63.062***	0.000
$CO_{i,t}$	+	-0.026	-6.471***	0.000
수정된 R ²	0.765 (F=3032.6)			
유효관측 수	7,44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 3) 참조

더미변수 $Size_{i,t}$ 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i의 t년도 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1', 아니면 '0'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정)

VI.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를 통하여 회계정보를 왜곡한 기업들과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회계제도 전반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독정책은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특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부실경영 등으로 퇴출시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건전성 감독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자금을 운용하는 상호금융회사로 그동안 상호금융업회계 처리준칙 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왔고, 직전연도 말 총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적이익 또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익유연화나 자본관리 등을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이나 유가증권처분손익의 실현시기 조정을 통하여 이익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감독정책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반기업의 경영자는 경영자 보상이나 부채계약의 위반 가능성 등 회계수치를 사용하는 계약에서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일반기업의 주요 동기와 다른 측면에서

이익조정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이사장(조합장)을 선출하며, 이사장은 일반기업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재선출되기 위하여 자신의 경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로서 보고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 신용협동조합은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수취기관과 영위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모형을 원용하여 신용협동조합의 특성(공동유대, 이사장 임기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조합원 예금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조합의 특성상 총수익의 68.5%를 차지하는 대출채권 이자수입이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이익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대손충당금설정액 및 관련 항목들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으로는 예금자보호기능이 예금자보호법에서 신탁중앙회 자체기금으로 전환된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 입수가 가능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동안의 7,445개 신탁-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사장 임기형태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법상 재연임이 허용(2013년 6월) 이후에 이사장이 재연임된 222개 신탁-연도를 제외한 7,223개 신탁-연도를 이용하였다.

<가설 1>은 재량적 항목을 반영하기 전의 비재량적이익에 따라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가설 2>는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재량성이 높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이익조정 전 당해 연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비재량적초과이익을 가지고 조합원 신임도 등을 고려하여 보

고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단체조합 보다 지역조합에서(<가설 1-a>), 자산규모가 작은 조합 보다 큰 조합에서(<가설 1-b>) 이익조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를 통한 이사장 교체와 관련하여,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이 연임기간(4년)에 비해 이익조정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 <가설 2>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동안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연임기간에 비해 이익조정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2013년 6월까지의 연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기간(4년) 중에는 다음 선거에 대비할 유인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사장 임기형태와 관련하여,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에 임기의 다른 연도(초임 1~3년 및 연임 1~4년)에 비해 이익조정을 더 크게 하고(<가설 2-a>), 연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 보다는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에서 이익조정을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b>). 이는 이사장 임기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 연임을 의식하여 이익조정을 크게 하려는 유인이 내재되어 있으나, 연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우 2013년 6월 이전까지 재연임이 불가하여 경영성과를 관리할 유인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장 교체의 경우 교체연도의 이익조정은 교체되지 않은 연도의 이익조정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c>). 선행 연구에서는 신임경영자가 미래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임년도의 이익을 하향조정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Moore, 1973; Strong and Meyer, 1987; 이아영 등, 2007), 이아영 등(2009)은 최고경영자가 교체되고 전임경영자가 사내에 잔류하지 않을 경우 음(-)의 이익조정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광영민 등(2011)은 최고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전임경영자가 퇴임하더라도 기업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임경영자가 취임년도에 전임경영자의 성과를 부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의 경영능력의 우수함을

과시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동기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 교체연도와 비교체연도 간에 이익 조정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조합의 이사장이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조합에 남아 필요에 따라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등 조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의 재량적 조정을 통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추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자본관리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의 표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때, 경영지도비율인 순자본비율 2% 미만인 집단에서, 총자산이 300억 원 미만인 집단에서 각각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보였다.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협동조합도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고, 일부 조합에서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함에 따라 이사장은 다음 선거를 대비하여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가지고 이익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총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동질성이 약한 지역조합에서 그리고 총자산이 큰 조합에서 이익조정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이 부실하거나 자산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이 자본을 관리하는데도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순자본비율이 재무상태 개선조치의 판단기준으로 작

용하고 있어 이들 조합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신용협동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용협동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은행과의 규제차이 해소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고, 다수의 소규모 영세조합이 제한된 시장에서 저축은행, 농업·수산업 등 단위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과의 과당경쟁으로 부실대출 취급유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예금·대출의 단순한 영업구조,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적지 않은 경영부실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가계대출비중(88.1%)이 높고,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비중(50.5%)⁷²⁾이 높아 부동산경기 하락이나 금리상승 등으로 개인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시 조합은 적지 않은 손실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그간 부실조합에 대해 꾸준히 구조조정을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100개 이상 조합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부실조합에 대한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익조정이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함에 있어 규모나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하려는 유인이 있는 만큼, 먼저 정확한 기간손익과 보유 여신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래 재무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조합과 자산규모가 큰 조합에서 이익조정 유인이 더 큼에 따라 이들 조합에 대하여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coverage ratio)을 100% 이상 유지토록 지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지도비율인 순자본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리스크 수준에 걸맞는 추가 자본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사장 임기 형태에 따른 이익조정 유인이 다르

72) 2015년 12월말 주택(아파트 포함) 담보대출 비중 30.1%를 포함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비중은 80.6%에 달한다.

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장 임기형태를 고려하여 보고이익 뿐만 아니라 비재량적이익까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재무제표 상의 대손충당금 항목이 이익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감독당국에서도 신용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예금을 수취하여 대출을 영위하는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감독시 재무제표 상의 이익정보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 항목에 대한 정보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 정책적 관점에서 회계품질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대손충당금설정액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보다 객관화함과 아울러 향후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미래채무상환능력(forward looking criteria)⁷³⁾을 기초로 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분석을 추구하였지만 검증모형이 단순하고 검증방법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부실조합이 많아 매년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대상기간 중 일부 신용협동조합이 표본에서 제외되고 2015년 말 정상 영업 중인 조합의 자료만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을 하계하는 요인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익조정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익조정을 예방하는 규제정립이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73) 국내 은행들이 1999년 새롭게 도입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대출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보다 미래의 사업 가치를 따져 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전망, 수익성, 경영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평가(계량 및 비계량 지표)한 미래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원리금 상환을 몇 개월 연체했느냐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금융감독원. (2004). 『신용협동조합 감독·검사제도』 .
- 금융감독원. (2015). 『신용협동조합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
- 신협중앙회. (2014). 『여신업무방법서』 .
- 신협중앙회. (2006-2015). 『신협통계』 . 각권 호, 2006년-2015년.
- 강태호. (2010). 「농협 상호금융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대학원.
- 곽영민, 최종서. (2011). 최고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간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 36(2), 129-184.
- 권수영, 김문철, 손성규, 최관, 한봉희. (2010).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 분석·평가·활용』 . 서울 : 신영사.
- 김경미. (2004). 「대손상각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민석, 김한수, 최관. (2012).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 사례 연구-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 21(6), 401-429.
- 문현주. (2004). 개별발생액접근법을 통한 은행의 이익관리 연구. 『회계학연구』 , 29(2) 111-131.
- 문현주. (2004). 「대손상각을 이용한 은행의 이익관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연희. (2005).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본비율 관리. 『세무와 회계저널』 , 6(2), 67-85.
- 선순용. (2010).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 한성대학교 대학원.
- 송 현. (2015). 「감사인 지정 상호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및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 한성대학교 대학원.

- 심동석, 안창호. (2015).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국제회계연구』, 64, 127-146.
- 은봉희. (2015).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아영, 전성빈, 박상수. (2007).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32(2) 117-151.
- 이아영, 전성빈, 박상수, 최종학. (2009). 최고경영자의 교체이유와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최고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 『회계학연구』, 34(2), 45-78.
- 정규언. (1992). 경영자 변경과 이익이연행위. 『회계학연구』, 14(1) 27-48.
- 지현미, 박홍조. (2006).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 자본비율 조정. 『회계저널』, 15, 23-44.
- 최효순. (2003). 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 조정과 주가반응. 『증권학회지』, 32(1), 35-70.

2. 국외문헌

- Beatty, A., S. L. Chamberlain and J. Magliolo. (1995).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s : The Influence of Taxes, Regulatory Capital, and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 : 231-261.
- Beaver, W. H., and E. E. Engel. (1996). Discretionary Behavior with respect to Allowances for Loan Losses and the Behavior of Security Pric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 : 177-206.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 99-126.
- Butler, A., and A. Newman. (1989). Agency Control Mechanisms, Effectiveness and Decision Making in an Executive's Final Year with a Firm.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5 : 451-464.
- Collins, J., D. Shackelford and J. Wahlen. (1995).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 : 263-291.
- DeAngelo, L. (1986). Accounting Numbers as Market Valuation Substitutes. A Study of Management Buyouts of Public Stockholders. *The Accounting Review* : 400-420.
- DeAngelo, L. (1988). Managerial Competition, Information Costs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Use of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s in Proxy Contes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0 : 3-36.
- Dechow, P., and R. Sloan. (1991).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

51–8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 193–225.
- Francis, J., D. Hanna, and L. Vincent, (1996). Causes and Effects of Discretionary Asset Write-off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 117–134.
- Gibbons, R., and K. J. Murphy. (1992). Does Executive Compensation Affect Investment?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5(2) : 99–109.
- Healy, P. (1985). The Effects of Bonus Schemes of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 85–107.
- Healy, P., and J. Wahlen. (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 13 : 365–383.
- Jones,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 193–228.
- Kim, M., and W. Kross. (1998). The Impact of the 1989 Change in Bank Capital Standards on Loan Loss Provisions and Loan Write-off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 69–99.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 163–197.
- Ma, C. (1988). Loan Loss Reserves and Income Smoothing, The Experience in the U.S.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Winter) : 487–497.
- McNichols, M., and G. Wilson. (1988).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rovision for Bad deb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 : 1–31.
- Moore, M. (1973). Management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ounting

-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1 : 100–107.
- Moyer, S. E. (1990).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13 : 123–154.
- Murphy, K. J., and J. L. Zimmerman. (1993). Financial Performance and Surrounding CEO Turnover.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 : 273–315.
- Pourciau, S. (1993). Earnings Management and Nonroutine Executive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 : 317–336.
- Roychowdhury, S. (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 : 335–370.
- Schipper, K. (1989).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3 : 91–102.
- Strong, J. S., and J. R. Meyer. (1987). Asset Writedowns : Managerial Incentives and Security Returns. *Journal of Finance*, 42 : 643–661.
- Warfield, T., and T. Linsmeier. (1992). Tax Plann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e Differential Earnings Component. *The Accounting Review*, 67 : 546–562.
- Wells, P. (2002). Earnings Management Surrounding CEO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Finance*, 42 : 169–193.

ABSTRACT

A Study on Earnings Management and CEO Turnovers of the Credit Unions

Park, Sang-Choon

Major in Accounting

Ph. D.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whether credit unions manage their earnings through discretionary management of provision for bad debt. For the research method, specific accruals approach which verified earnings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previous study was used. In the case of credit unions, loss provision for loan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ir assets, is considered to be a highly discretionary item. Thus, term-end provision for bad debt(provision expense)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non-discretionary earning was set as explanatory variable to verify whether earnings had been managed through modifying provision for bad debt. Moreover, this study looked into how variables such as the amount of loans, non-performing loans, term-beginning provision for bad debt and write-offs affect the term-end provision for bad debt. For the sample data of the empirical analysis, data from 7,445 credit unions-year ; regional cooperatives and group/association cooperatives normally operating as of end of 2015-for the period of 10 years from 2006 to 2015 were used. For analyzing earnings management affected by the

term of the board chairman during the same period, data from 7,223 credit unions–year were used.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credit unions. Credit unions carry out business activities for their members with common ties (community/group or association/employees) and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banks or savings banks. Thu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credit unions' earnings management differs according to their common ties or asset size. Also, given that credit unions hold their board chairman (i.e.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election every 4 years, it was verified whether earnings management was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chairman's 4–year term (first term, consecutive term, etc.). In addition, through an additional analysis, it was analyzed whether the net capital ratio had been managed by adjusting the amount of term–end provision for bad debt (provision expense), which the board chairman has a high level of discretion on.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anagement of credit unions managed earnings by using the term–end provision for bad debt (provision expense) which the management have a high level of discretion on. Moreover, in the analysis on whether earnings management was made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redit unions, it was found that community cooperatives more actively engaged in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group/association cooperatives while cooperatives with large assets did so compared to those with small asset size. With regard to the replacement of board chairman by election, it turned out that board chairmen serving in their first 4–year term tend to make greater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their following four–year term since they were mindful of their next election result. It was also found that earnings management was done to a larger extent in the last year of the board chairmen's first term (4 years) compared to other years in their first term or consecutive

term, and in the last year of the first term(4 years) compared to the last year of the consecutive term(4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earnings management carried out in the year of CEO turnovers(i.e. in the first year of the first term), it turned out that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did not differ from the management made in other years. Meanwhile, an addi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 management of credit unions have little incentives for managing the net capital ratio through discretionary management of term-end provision for bad debt.

This study implies that as the management of credit unions have incentives for making discretionary management of their earnings by using the provision for bad debt,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guidance ratio including the coverage ratio and net capital ratio so that financial information would not be distorted. Moreov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a differentiated supervision on credit unions based on their size and common ties, and improve the objectivity of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asset soundness and assessing expected recovery amount by reducing the level of discretion given to the management. It is also expected to induce a higher level of loan loss provis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forward-looking criteria(FLC). However, despite the differentiated approach and achievement made in this study, there may be limitations of using simple verification models and unconventional verification methods.

KEYWORD : Credit Unions, Earnings Management, Provision, CEO (board chairman) Turnovers